

2017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실효성 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2017. 12.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제 출 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귀하

이 보고서를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실효성 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 12.

- 과제제안 : 이명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연구기관 : 한국NGO학회
- 책임연구원 : 박상필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대우교수)
- 연구원 : 허태욱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조교수)
윤창원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 보조원 : 김민성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 자문위원 : 김태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라미경 (순천향대학교 연구교수)
김성균 (지역사회연구원 소장)
남기범 (성결대학교 교수)

(요약문)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실효성 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NGO학회

요 약

본 연구는 서울시 시민단체 재정지원사업의 관리체계 및 절차가 합리적이고 형평의 원칙에 맞는지,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및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신뢰구축에 효과가 있는지, 관련 법령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분야의 이론서, 서울시 자료, 서베이 조사, 인터뷰 및 집단 토론, 관련 법령의 분석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융합적으로 사용하였다.

서울시의 관리과정, 서베이 조사, 관련 법령의 분석 등을 통해 서울시의 재정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사용을 통해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몇 가지 문제를 발견하였다. 관리절차에서는 사업영역의 협소성, 서류 심사방식의 문제, 공익사업선정위원의 비전문성, 사업선정에서 대형단체에 대한 이점, 단년간 지원제도의 한계 등과 같은 문제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서베이 조사에서는 단체의 활동범위가 세계 및 전국 수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인건비 지급 불가에 대한 불만이 많으며, 공익사업선정위원과 컨설팅 전문가의 전문성의 부족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런가 하면, 사업 신청 단체 중에서 협의형/연대체가 예상외로 많고, 단체의 대부분이 대안사회운동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의 재정지원사업이 장기적 시민사회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서울시와 시민단체 간의 신뢰구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은 통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시민사회 전문이론가의 참여, 최종심사에서 면접심사 방식의 활용, 신규 및 특수단체에 대한 사업선정 기회의 확대,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법령에 대한 개정,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의 제정, 서울시 각종 조례의 개정과 시민공익활동 참여 및 시민단체지원기금 설치와 관련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협의형/연대체에 대한 전략적 지원과 함께,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와 정부-시민단체 간 신뢰구축에 대한 효과를 전향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수립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지원금을 증대하고, 지원금의 일부를 상근자의 인건비로 사용하는 실험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서울시 행정부처에서 직접 지원을 담당하기보다는 독립재단의 설립을 통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측면과 장기적인 발전을 반영하는 지원제도를 제안하였다. 또한 자체적으로 5년 단위로 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연구, 조사를 통해 지원사업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방향을 수정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개선책을 마련하는 평가제도를 제안하였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배경과 목적	1
가. 연구배경	1
나. 연구목적	2
2. 연구 범위와 방법	3
가. 연구범위	3
나. 연구방법	3
다. 연구추진체계	4
II. NGO와 정부	6
1. NGO의 정의	6
가. 사회구분 모델	6
나. 시민사회의 의미	7
다. NGO의 개념정의	9
2. NGO와 정부의 관계	10
가. NGO와 정부의 상호작용	10
나. NGO에 대한 정부지원의 논거	11
다. NGO에 대한 정부지원의 유형	14
III. 서울시 NGO 지원사업의 분석	17
1. 선행연구의 검토	17
2. 지원사업의 관리과정 분석	17

가. 개요	17
나. 사업일정	17
다. 지원사업 영역	19
라. 사업선정 심사방법 및 기준	20
마. 사업 진행 및 결과 평가방법	23
바. 단체지원 및 예산규모의 추이	23
사. 지원단체에 대한 평가결과	26

3. 지원사업에 대한 서베이 분석 30

가. 설문조사의 개요	30
나. 조사결과의 분석	32

4. 지원사업 관련 법령의 분석 51

가. 개요	51
나. 법령의 분석	54

IV. 지원사업의 제도개선 방안 71

1. 행정 절차 및 관리과정의 개선 71

가. 개요	71
나. 신청단체의 현황 파악	71
다. 지원사업의 신청	72
라. 사업선정의 방식 및 기준	73
마. 사업의 평가	74
바. 기타 행정편이를 위한 개선	74

2. 지원사업의 적절성 및 효과성 증진 방안 75

가. 재정지원의 효과성 증진	75
나. 지원금의 수준 및 사용	75
다. 컨설팅의 효과성 제고	76
라. 시민단체와 정부 간의 신뢰구축 강화	76

3. 관련 법령의 개선	76
가.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의 제정	76
나. 현행 서울시 조례의 개정	78
다. 서울시 조례의 제정을 위한 노력	78
V. 결론	80
참고문헌	82
부록 1: 단체조사 설문지	87
부록 2: 관련 법률 및 조례	91

표 목차

〈표 1-1〉 연구범위	3
〈표 2-1〉 한국 비영리단체(NPO)의 분류	9
〈표 2-2〉 정부 재정지원 유형 비교	15
〈표 2-3〉 정부 재정지원 유형의 장단점 비교	16
〈표 3-1〉 지원사업 일정(2017년)	19
〈표 3-2〉 지원사업 유형(2016-17년)	20
〈표 3-3〉 지원사업의 심사방식	21
〈표 3-4〉 공익사업선정위원회(2017년)	22
〈표 3-5〉 지원사업의 심사기준	22
〈표 3-6〉 지원사업의 평가방식	23
〈표 3-7〉 지원사업의 단체 신청 및 지원 추이(2013-17년)	24
〈표 3-8〉 지원사업의 예산 추이(2013-17년)	24
〈표 3-9〉 영역별 지원금(2017년)	25
〈표 3-10〉 단체에 대한 지급원 현황 및 추이(2013-17년)	26
〈표 3-11〉 단체에 대한 중복지원금 추이(2013-17년)	26
〈표 3-12〉 지원단체의 평가결과 추이(2013-16년)	27
〈표 3-13〉 지원금액별 평가결과 추이(2013-16년)	28
〈표 3-14〉 지원금액별 양호/탁월 평가결과 추이(2013-16년)	29
〈표 3-15〉 단체의 소재지	33
〈표 3-16〉 단체의 연간예산	34
〈표 3-17〉 단체의 회원수, 상근자수, 자원봉사자수	35
〈표 3-18〉 단체의 법인형태	35
〈표 3-19〉 단체의 조직형태	36
〈표 3-20〉 단체의 활동범위	37
〈표 3-21〉 단체의 활동영역(대분류)	38
〈표 3-22〉 단체의 활동영역(중분류)	39
〈표 3-23〉 재정지원사업의 신청 횟수	40
〈표 3-24〉 재정지원사업 신청하지 않은 이유	40
〈표 3-25〉 사업지원의 선정 횟수	41
〈표 3-26〉 선정횟수와 단체의 예산규모와의 상관관계1	42
〈표 3-27〉 선정횟수와 단체의 예산규모와의 상관관계2	42

〈표 3-28〉 선정횟수와 단체의 활동분야와의 상관관계(여성단체와 기타단체)	43
〈표 3-29〉 신청횟수와 선정횟수 간의 상관관계	44
〈표 3-30〉 사업선정에서 탈락한 이유	44
〈표 3-31〉 지원사업의 신청 및 선정의 문제	45
〈표 3-32〉 선정과정의 공정성 만족도	46
〈표 3-33〉 지원금액 수준의 만족도	46
〈표 3-34〉 단체예산과 지원금액 수준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47
〈표 3-35〉 지원사업 관리과정에 대한 만족도	48
〈표 3-36〉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48
〈표 3-37〉 지원금의 효과 영역	49
〈표 3-38〉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사업의 효과	49
〈표 3-39〉 시민단체 재정지원 관련 법령의 비교	53
〈표 3-40〉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시민단체 지원내용	59
〈표 3-4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활동1(2000년대)	61
〈표 3-4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활동2(2010년대)	62
〈표 3-4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활동3(2015년 이후)	63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방법의 체계	4
〈그림 1-2〉 연구방법추계	5
〈그림 2-1〉 제3섹터 모델	7
〈그림 2-2〉 한국 시민사회의 개념들	8
〈그림 2-3〉 한국 NGO의 개념도	10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가. 연구배경

현대사회에서 정부는 여러 가지 딜레마에 처해 있다. 우선 정부의 규모에 대해 논쟁적이다. 정부의 규모는 20세기 들어와서 계속 증가하다가 1970년대 신보수주의의 등장과 함께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신보수주의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적 업무를 민간 영역으로 이전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재정지출에서 본다면, 국가마다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증가하거나 축소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오늘날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복지국가의 황금기처럼 정부의 지출을 증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정부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첨예한 정치이데올로기 대결이나 낮은 경제성장률을 고려한다면, 정부지출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¹⁾

정부의 규모나 지출에 관계없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대체로 하락하고 있다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탄지(Neil Tanzi)와 벨라우스(Rebecca Ballhaus)의 조사에 따르면, 1960년대 미국인의 (연방)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70%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지지율은 1990년대에 36%로 떨어졌고, 2010년에 와서는 겨우 17%를 유지하고 있다(Tanzi and Ballhaus, 2013). 정부에 대한 지지율의 하락은 전세계적인 경향으로 오늘날 정부에 대한 신뢰도의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전반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하기 어렵다.²⁾

정부에 대한 신뢰도의 하락은 사회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늘날 사회는 구조가 복잡하고 갈등이 중층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생산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나 수준 높은 요구를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관료제를 통해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정부는 큰 문제를 해결하기엔 너무 작고, 작은 문제를 해결에는 너무 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가 가진 이러한 딜레마로 인해 정부는 시민사회와 파트너십(partnership)을 형성하여 시민사회의 신뢰도를 활용하고, 시민사회의 자원적(voluntary) 에너지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정부와 시민사회 간에 협력이 증대함에 따라 시민사회에 대한 정

1) 2004년 현재 미국의 경우, GDP 대비 정부지출은 36%였다. 동년 스웨덴의 경우는 57%, 한국은 28%였다. 이런 점에서 한국에서 정부규모의 확대나 지출의 증대를 위한 여지는 아직도 많다고 할 수 있다.

2)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매우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것에 대한 반사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개별 정권에 대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부의 관심과 재정지원이 늘고 있다. 물론 시민사회에는 다양한 결사체가 있고, 공공성(publicness)이나 공익(public interest)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이나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시민사회의 결사체 중에서 공익성이 강한 대표적인 단체로서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를 들 수 있다. 한국은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NGO(시민단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³⁾

정부의 신뢰도 하락 및 능력의 한계, NGO의 수적 증가와 영향력의 증대로 한국에서도 2000년대에 들어와서 NGO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는 각종 NGO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작하였다.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실시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시는 매년 20억 원 안팎의 재정을 NGO에게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과연 법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서울시의 지원사업은 절차적 합리성을 지니고 있는가? 나아가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시민사회의 활성화라는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가?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NGO에게 공공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서울시는 한국의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수도이면서 지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서울시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나. 연구목적

본 연구는 현재 서울시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하고, 기타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시 공익사업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서울시 소재 NGO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시민단체 재정지원사업의 운영 및 실태를 분석하여 다음 몇 가지 연구 성과를 생산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시민단체 재정지원 사업의 관리체계 및 절차가 합리적이고 형평의 원칙에 맞는가? 특히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여 지원사업의 심사과정의 특정단체에게 유리하도록 전개되어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것이다.

둘째, 현재의 지원방식이 시민단체에게 어떤 이점을 주고 있으며,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는가? 재정지원이 시민단체의 역량강화나 시민단체와 정부 간의 신뢰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민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치지 않은지

3) NGO와 시민단체의 차이는 학술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NGO와 시민단체를 상호 교환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두 개념의 유사성과 차이에 대해서는 박상필(2011) 제4장 참조.

도 살펴볼 것이다.

셋째, 현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민단체 지원사업이 지향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현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법률의 제정, 그리고 이에 따른 새로운 기구의 설치나 제도의 형성도 포함할 것이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가. 연구범위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의 광역시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단체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제정 이후,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지원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자료수집과 비용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지원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또한 서울시에 대략 3000개에 가까운 NGO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거나 등록되어 있는데, 서베이 조사에서 이러한 단체 전체를 모집단으로 설정하는 것 또한 샘플의 구성, 연구기간,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난 5년 간 서울시 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한 단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연구 범위를 정리하면 아래 <표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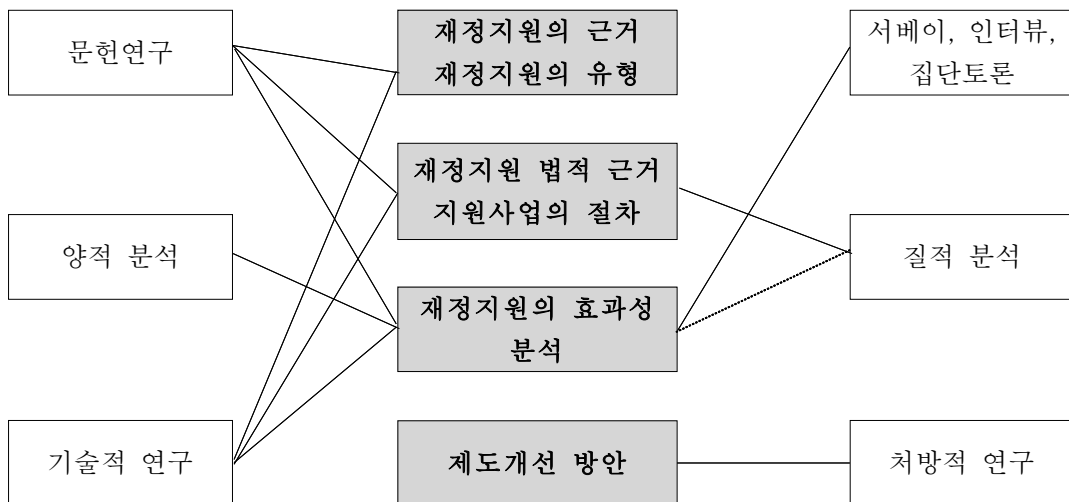
<표 1-1> 연구범위

구분	범위	비고
공간적 범위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단체 및 선정단체
내용적 범위	지원사업 관리절차	서울시 자료 검토
	재정지원 효과성 분석	서베이, 인터뷰, 집단토론
	재정지원 관련 법령 분석	관련 법령 분석
	지원사업 대안 모색	분석에 근거
시간적 범위	2013-2017년	5년 간

나.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앞서 설정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방법을 융합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재정지원과 관련된 이론을 각종 연구문헌을 통해 고찰하겠지만, 서울시의 관리절차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문헌연구 외에 본 연구는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서베이(survey)와 인터뷰를 사용한다. 비용을 감안하여 서베이를 주로 하되, 시민단체의 몇몇 사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상근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기로 한다.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 재정지원의 체계 및 절차에 대해서는 질적 분석을 하겠지만, 서베이를 통한 효과성 분석에서는 양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물론 양적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제한적이거나 인터뷰를 통해 질적 분석을 하도록 한다(아래 그림의 점선 부분). 또한 기본적으로 내용을 기술하는(descriptive) 방식을 사용하되, 제도개선 방안에서는 처방적(prescriptive)인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상 각 주제에 따른 연구방법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방법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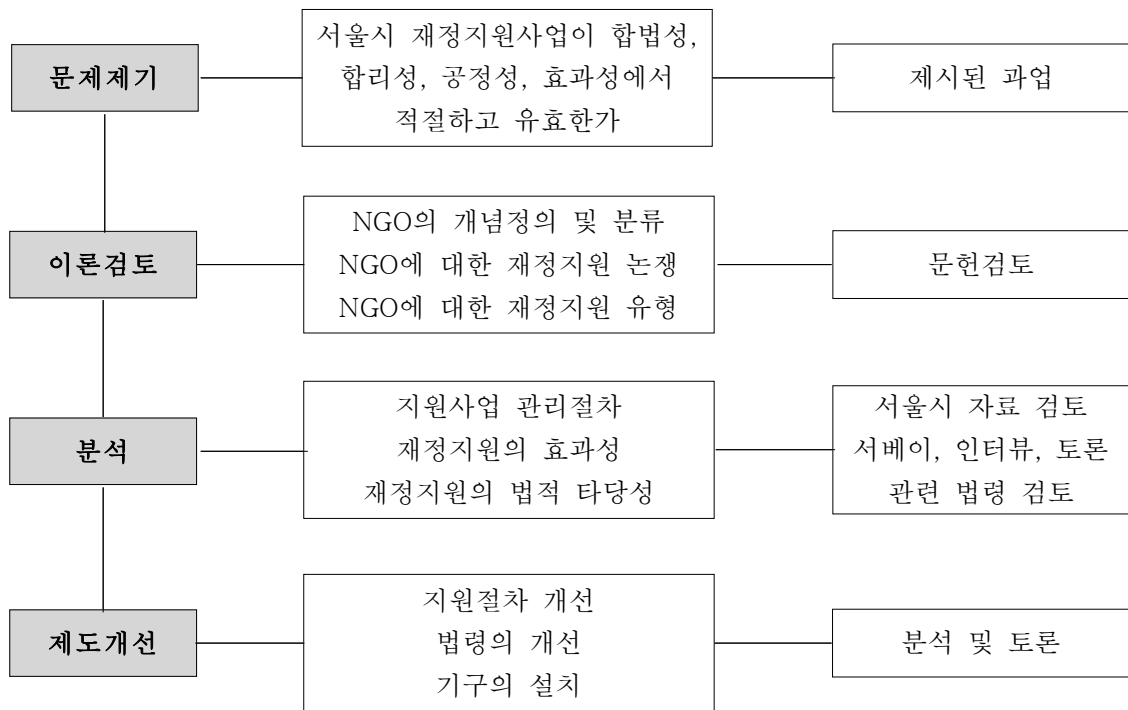


다.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는 현재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이 과연 시민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서울시)-시민단체 간의 파트너십 구축에 기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재정지원사업의 관리절차가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검토하고, 현행 지원사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각종 법령의 적절성도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과 검

토를 통해 재정지원사업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모색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에는 지원절차의 개선과 법령의 개정 및 제정도 포함한다. 지원정책과 관련된 새로운 기구의 설치도 법령의 제정 및 개정과 함께 검토할 것이다. 이상 개략적으로 정리한 연구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연구방법추계



II. NGO와 정부

1. NGO의 정의

가. 사회구분 모델

광의적 의미의 사회를 구분하는 모델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가장 대표적으로 공공섹터와 민간섹터로 구분하는 2섹터 모델이 있다. 예를 들어, 수마리왈라(Russy Sumariwalla)는 사회를 크게 공공섹터와 민간섹터로 구분하고, 민간섹터를 다시 영리섹터와 비영리섹터로 구분한다. 그리고 비영리섹터를 공익단체와 집단이익추구단체로 구분한다(Sumariwalla, 1983). 이 외에도 킨(John Keane)과 헬드(David Held)는 광의의 사회를 국가와 시민사회로 구분한다(Keane, 1988; Held, 1989). 한국에서도 김성국(2001)이나 김세균(1995)과 같은 학자가 국가와 시민사회로 구분하는 2섹터 모델을 주장한다.

3섹터 모델은 여러 학자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데, 크레머(Ralph Kramer), 우스노우(Robert Wuthnow), 코헨(Jean Cohen)과 아라토(Andrew Arato) 등과 같은 학자를 들 수 있다. 크레머는 사회를 조직에 초점을 두어 정부조직, 영리조직, 자원조직으로 구분한다(Kramer, 1981). 우스노우도 비슷하게 국가, 시장, 자원섹터로 구분한다(Wuthnow, 1991). 코헨과 아라토는 사회를 국가, 경제, 시민사회로 구분한다. 한국에서는 박상필(2007; 2011)이 대표적인 3섹터 모델 주창자로서 사회를 국가, 시장, 시민사회로 구분한다. 사회를 국가, 정치사회, 시민사회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학자로서는 최장집, 임영일, 손호철 등을 들 수 있다(손호철, 2001; 임영일, 1992; 최장집,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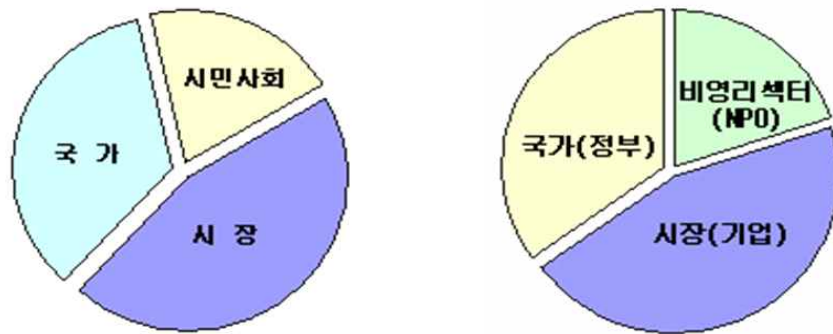
물론 4섹터 모델을 주창하는 학자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 반틸(Jon Van Til)과 바우어(Rudolph Bauer)를 들 수 있다. 반틸은 사회를 정부, 기업, 제3섹터, 비공식섹터로 구분한다(Von Til, 2000). 한편 바우어도 반틸과 비슷하게 사회를 정부, 기업, 제3섹터, 공동체로 구분한다(Bauer, 1998). 여기서 제3섹터가 대체로 시민사회에 해당한다.

사회구분 모델 중에서 3섹터 모델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데, 3섹터 모델 중에서도 다수는 국가, 시장(경제), 시민사회로 구분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광의의 사회를 국가, 시장, 시민사회로 구분하기로 한다. 미국에서는 시민사회 대신에 비영리섹터(nonprofit sector)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고, 제3섹터라는 개념의 유용성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⁴⁾ 그 외에도 미국에서는 비영리섹터를 자원섹터(voluntary sector), 독립섹터(independent sector)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래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이그림은 전체 섹터를 백분율로 하여 어떤 섹터가 커지면, 다른 섹터가 작아지는 것을

4) 시민사회 혹은 비영리섹터를 제3섹터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기드론(Benjamin Gidron)을 들 수 있다(Gidron, et al. 1992: 3-4).

잘 반영하게 된다.⁵⁾ 섹터 간의 이중 경계선은 섹터의 경계가 모호하고 섹터 간의 경계에 위치하는 결사체가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⁶⁾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의 조직을 정부, 시장의 조직을 기업이라고 하면, 시민사회 혹은 비영리섹터에 있는 조직을 총칭하여 비영리단체(NPO: nonprofit organization)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 제3섹터 모델



문헌출처: 박상필(2011: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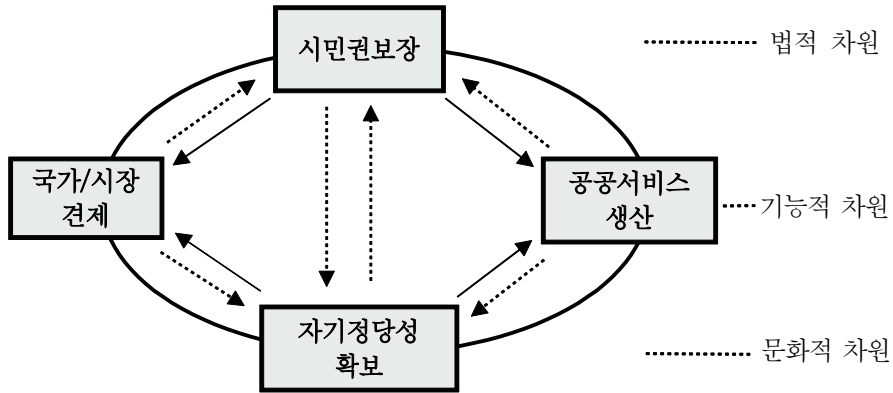
나. 시민사회의 의미

앞서 제3섹터 모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 바깥의 영역이다. 국가는 권력을 매개로, 시장은 자본을 매개로 한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개인 간의 상호 교류와 의사소통을 매개로 하는 문화영역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 바깥의 자발적 결사체의 문화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시민사회는 다차원적 개념으로서 국가와 학자마다 개념의 의미가 다르다. 대체로 한국에서는 아래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적 차원(시민권 보장), 기능적 차원(국가/시장 견제, 공공서비스의 생산), 문화적 차원(자기정당성의 확보) 등 다차원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국가와 시장에 대한 견제 및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영역이다. 또한 내부에 자유, 인권, 양성평등, 약자권리 옹호, 투명성, 환경보호, 정신적 가치 등과 같은 이념을 지향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5) 여기서는 한국사회를 가정하여 각 섹터의 비중을 배분하였다.

6) 예를 들어, 공기업은 국가와 시장 사이, 국공립대학과 정당은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 노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조직은 시장과 시민사회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2> 한국 시민사회의 개념틀



문헌출처: 박상필(2011: 111) 재구성

시민사회는 공공성(publicness)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영역이다.⁷⁾ 물론 시민사회의 공공성 또는 공익(public interest)의 정도는 결사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시민사회에는 비영리병원부터 시작하여 친목단체까지 다양한 결사체가 있다. 비영리단체의 분류방식은 다양하고, 국가나 학자마다 분류방식에서 차이가 있다.⁸⁾ 아래 <표 2-1>은 한국적 상황을 가정하여 비영리단체를 8개 영역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 중에서 공익단체이면서 회원조직인 시민단체가 NGO이다. 따라서 NGO는 시민사회의 결사체 중에서 공익성과 역동성이 강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⁹⁾

7) 여기서 공공성의 개념은 공개성, 공정성, 공익, 공공제도 등과 같은 요소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본다. 따라서 공공성이란 개념은 대체로 공익이라는 개념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8) 비영리단체의 다양한 분류방식에 대해서는 Salamon and Anheier(1997)과 박상필(2014) 참조.
 9) 공익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공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하고(부존재설), 존재한다고 보는(존재설) 학자들도 규범설과 과정설로 나뉘어져 있고, 그 중간에 절충설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여기서는 공익을 “일정한 사회단위 내에서 사회구성원 불특정 다수나 사회적 약자의 합당한 이익”으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서는 박상필(2011: 141-413) 참조.

<표 2-1> 한국 비영리단체(NPO)의 분류

목적	구분		주요 단체
	조직 유형	활동영역/기능	
공익단체	기관형조직	의료/보건단체	종합병원, 정신병원, 요양원
		교육/연구단체	초등·중등·고등사립학교, 직업학교, 연구소
		복지서비스단체	양로원, 탁아소, 고아원, 직업훈련소, 복지관, 모자보호소, 청소년수련원
		예술/문화단체	박물관, 미술관, 극장, 오케스트라, 레크리에이션단체
	회원	시민단체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자원봉사단체, 국제원조단체, 모금단체, 생협
		종교단체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각종 종교단체
집단이익추구단체	조직	직능단체	상공회의소, 전경련,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친목단체	컨트리클럽, 동창회, 향우회, 화수회, 상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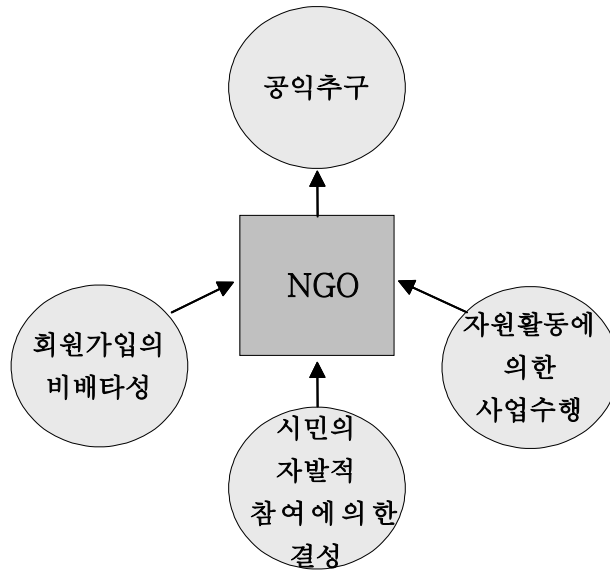
문헌출처: 박상필(2011: 151)

다. NGO의 개념정의

시민사회 내의 각종 결사체를 지칭하는 용어는 NPO와 NGO 외에도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CMO(civil movement organization), CVO(community voluntary organization), PVO(private voluntary organization) 등 다양한 용어가 있다. 이 중에서 NGO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물론 NGO에 대한 개념정의는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UN(united nations)이나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사용하는 개념 등을 조합해보면, 대체로 아래 <그림 2-3>과 같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회원가입의 비배타성, 자원활동에 의한 사업수행, 공익 추구 등과 같은 요소를 충족하는 결사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NGO는 “비정부·비정파·비영리 결사체로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결성되고, 회원가입의 배타성이 없으며, 주로 자원활동에 입각하여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할 수 있다(박상필, 2011: 138).¹⁰⁾

10) 이러한 개념정의는 국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비슷하다. 다만 일본에서는 국내문제를 다루는 단체를 NPO, 국제문제를 다루는 단체를 NGO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박상필(2011: 135) 참조.

<그림 2-3> 한국 NGO의 개념도



문헌출처: 박상필(2011: 138)

NGO의 주요 이념이나 가치는 자율성, 자원성(voluntarism), 연대성, 국제성, 공공성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NGO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NGO에 내장되어 있는 이러한 공익성에 근거하고 있다.

2. NGO와 정부의 관계

가. NGO와 정부의 상호작용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NGO는 시민사회에서 대표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결사체로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또는 대안적인 사회를 향한 혁신을 추구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실험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와 밀접하게 상호 작용하는데, NGO와 정부의 관계는 크게 대립관계와 협력관계로 나눌 수 있다.

NGO와 정부의 관계를 견제·대립관계로 보는 것은 근대 이후 시민사회의 발생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대국가에서 시민사회는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민적 교류와 연대의 공간이었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역동적인 결사체인 NGO는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는다. 한국에서는 1987년 이

전에 태동단계의 시민사회가 국가로부터 많은 억압을 받았다. 따라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제한된 상태에서 국가에 저항하였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는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NGO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고, 이러한 NGO들은 국가의 민주화를 주요한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많은 NGO는 국가 혹은 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NGO와 국가 혹은 정부 간의 견제·대립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협력관계로 발전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서구사회에서 복지국가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사회가 복지국가 황금기를 맞게 되면서 NGO는 정부와 협력하여 각종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NGO는 국가 프로젝트의 실패 이후에도 정부와 협력하거나 또는 정부를 대체하여 각종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였다. 오늘날 NGO는 정부의 개혁을 지지하거나 세계자본을 공동으로 견제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1987년 이후 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형성·성장하는 시기에 NGO가 국가의 민주화를 주요 목표로 삼았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생활권리를 추구하게 되면서 정부와 협력하여 각종 공공서비스를 생산할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물론 민주화를 위한 개혁의 과정에서 정부의 개혁 동반자로서 사회혁신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NGO와 정부의 관계는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일률적으로 대립관계를 형성한다거나 협력관계를 형성한다기보다 단체의 성향에 따라, 또는 정책의 성격에 따라 견제와 협력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개별 단체에서도 견제와 협력의 변증법적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NGO와 정부는 활발하게 교호하고 상호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심지어 국내의 차원을 넘어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NGO는 거버넌스(governance)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정부와 밀접하게 상호 작용하고 있다.

나. NGO에 대한 정부지원의 논거

시민사회의 자율적 결사체인 NGO에 대해 정부가 공공재정을 지원해야 하는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시민사회, 혹은 더 좁게는 NGO의 활성화에 기여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논쟁이 있었다. 예를 들어, 오코넬(Brian O'Connell)이나 샴브라(William Schambra)와 같은 학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시민사회의 발달을 저해하고, 시민사회적 가치를 발현하는 본래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반대한다(O'Connell, 1983; Schambra, 1998). 이 외에도 립스키(Michael Lipsky)와 스미스(Steven Smith)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정부통제와 자원의존

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페리스(James Ferris)와 그래디(Elizabeth Graddy)는 재정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단체의 경쟁으로 인한 관료 요구에 대한 순응을 이유로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Lipsky and Smith, 1989; Ferris and Graddy, 1989).

그런가 하면, 딜룰리오(John Dilulio)나 스카치폴(Theoda Skocpol)과 같은 학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시민단체의 역량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찬성한다(Dilulio, 1998; Skocpol, 1998). 와이스브라더(Burton Weisbrod)도 시민단체를 포함한 각종 비영리단체의 활동이 중위투표자(median voter)에 의해 채택되지 못하는 집합적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Weisbrod, 1988). 피시오토(R. Piciotto)와 카울(I. Kaul)도 비영리단체의 서비스공급이 정부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각종 결사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Piciotto, 1995; Kaul, 2006).

국내에서도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단체의 재정빈곤으로 인한 사업수행의 어려움, 시민사회의 토대구축 한계 등을 고려한다(강상욱, 2001; 박상필, 2001; 박충훈·김연수, 2002). 반대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단체의 비판능력과 자율성의 저하, 정부구조에의 동화, 단체의 재정독립성의 왜곡 등을 문제 삼는다(남동희, 2006; 박상필, 2001; 임승빈, 2009; 정광호, 2003).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의견도 다양하지만, 대체로 다수가 찬성하는 쪽이다. 박상필(2000)이 1999년 '서울NGO세계대회'에 참석한 국내외 270여 명의 NGO 지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의 NGO 지도자들도 다수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찬성하였다. 강상욱(2001)이 전국 70여 개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정부의 재정지원이 시민단체의 기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찬성 의견이 높다. 김동춘이 그의 동료들과 조사한 결과에서도 시민단체의 재정적 빈곤 때문에 정부지원이 시민단체의 재정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양자 간의 파트너십을 증대한다는 측면에서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김동춘 외, 2004). 주성수 외(2001), 원유미(2002) 등의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다수가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NGO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찬반은 각각의 논리가 있다. 그렇다면 재정지원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는 아래 몇 가지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다(박상필, 2008: 192-196; 2011: 328-330).

첫째, NGO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NGO는 국가권력과 시장권력을 견제할 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서비스를 생산한다. 먼저 NGO는 시민참여와 권력견제를 통해 민주주의의 다양한 가치를 지원하고 옹호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NGO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역할은 정부의 시스템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개인의 욕구가 다양하고 갈등이 중층적인 현대사회에서 정부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더구나 개인 욕구의 다양

화와 함께 공공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거대한 관료제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정부로써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복지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NGO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서비스의 생산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환경에서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정부 혼자 국제적인 수준에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NGO는 정부나 기업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자유, 평등, 인권, 약자의 권리, 양성평등, 환경보호, 대안사회 모색, 실험정신, 영성의 발현 등과 같은 가치를 추구한다. 이러한 가치는 국가의 정당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개인의 삶의 질 증대를 위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둘째, NGO가 공공문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이다. NGO가 공익을 추구하고 사회혁신을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라면, 정부의 재정지원은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그런데 NGO는 개인의 정신과 관련된 서비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 소규모의 사람이 원하는 서비스, 일정한 지역에 편재된 서비스 등 정부가 방관하거나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유리하다. 이러한 서비스 영역에서 NGO는 정부에 비해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영역에서는 정부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나 에이즈 환자의 권리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도서 벽지 독거노인의 영정사진의 촬영과 같은 경우는 정부가 방관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NGO의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NGO가 공익을 추구하고 일부 영역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NGO의 재정이 넉넉하다면 굳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NGO가 시민사회 내에서 회비나 기부금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것은 NGO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NGO는 재정 빈곤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박상필이 1999년 ‘서울NGO세계대회’ 때 전 세계 NGO 지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NGO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두 가지 문제는 시민참여의 부족과 재정 빈곤이었다(박상필, 2000). NGO의 재정은 회비나 기부금 외에 정부지원금, 수익사업 이익금 등 다양한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 국가와 단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세계 각국의 NGO는 전체 재정의 20-30% 정도를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한국에서도 정부가 NGO의 재정 빈곤을 방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넷째, NGO가 가진 사회적 권력과 영향력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집단의 대결과 타협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각 집단들은 자신의 이념을 추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익집단의 압력행사를 예로 들 수 있다. NGO 또한 사회의 중요한 한 세력으로서 이익집단에 비해 훨씬 더 강한 정당성을

가지고 공공의 가치를 추구한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러한 집단에 대한 자원배분을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선진국에서도 이익집단이나 노동조합의 역할이 점진적으로 후퇴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NGO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이익집단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NGO의 요구를 배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렵다. 여기서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발생하게 된다.

다. NGO에 대한 정부지원의 유형

NGO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일정한 논거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를 크게 공개경쟁, 단독계약, 단체설립 지원, 특별지원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각 지원방식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박상필, 2008: 199-210)

첫째, 공개경쟁 방식이다. 공개경쟁은 정부의 관련 부처가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공고를 하고 단체로 하여금 공모하도록 한 다음,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경쟁하여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현재 정부기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하여 매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단체들에게 경쟁적인 심사를 통해 지원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은 동일한 법률에 근거하여 반크를 비롯한 단체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둘째, 단독계약 방식이다. 이 방식은 공개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업을 위해 특정한 단체에게 단독계약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로 조사·연구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많다. 이 방식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이 법에 제정되기 이전에 적용되었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재정경제부가 녹색소비자연대와 같은 전문단체에게 소비자운동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용역을 의뢰하거나, 동북아역사재단이 한일 간 시민단체의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하여 YMCA한테 사업을 의뢰하고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대표적인 공개경쟁의 방식 속에서 부가적인 방식으로 현재에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

셋째, 단체설립 지원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정부의 부서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단체들이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유도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절약이 필요한 시점에 산업자원부가 에너지 관련 여러 단체들에게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시민운동을 요청하면, 여러 단체들이 연합하여 '에너지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환경부 지원에 의해 결성되어 재정지원을 받은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운동협의회'도 마찬가지다. 이 방식은 현재로써는 자주 사용되지 않지만, 정책적으로 필요할 경우 시행이 가능하다.

넷째, 특별지원 방식이다. 이 방식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운동중앙협의회 등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법률이 제정되었고, 정부 친화적인 운동을 전개하여 관변단체의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에서 법률의 폐지 및 배타적 지원에 대한 중지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다양한 법정단체가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

이상 4개 지원유형의 주관부서, 지원받는 단체의 사례, 법적 근거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 2-2>와 같다. 이러한 재정지원 방식은 정부가 NGO에게 직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인데, 이 외에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있다.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거나 우편료를 지원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재단이나 기금을 설치하여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¹¹⁾

<표 2-2> 정부 재정지원 유형 비교

지원 유형	주관 부서	지원받는 단체	법적 근거
공개경쟁	행정안전부	환경운동연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동북아역사재단	반크	
단독계약	재정경제부	녹색소비자연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동북아역사재단	YMCA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단체설립 지원	산업자원부	에너지시민연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운동협의회	
특별지원	행정안전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행정안전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문헌출처: 박상필(2008: 200) 재구성

물론 각 지원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지원방식의 장단점은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정책적으로 지향하고, 지원 받는 NGO가 요청하는 가치인 단체의 자율성 확보, 재정충족 정도,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신뢰구축 등과 같은 기준에 따라 상호 비교할 수 있다(박상필, 2008: 198). 공개경쟁 방식은 시민단체의 자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장점이 있으나, 재정충족 정도나 정부·시민단체 간의 신뢰구축에는 크게

11) 기금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여성발전기금을 들 수 있다. 여성발전기금은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여성부)과 지방(광역자치단체)에서 정부가 여성의 발전을 위해 일정한 재정을 마련하여 여성NGO에게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여성발전기금은 2014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뀔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양성평등기금을 마련하여 양성평등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에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운용은 세입·세출예산과는 달리 신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단독계약 방식은 단체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제한하지만, 재정충족 정도나 신뢰구축에 일정한 효과를 갖는다. 단체설립 지원 방식은 재정충족 정도에서 가장 효과가 크지만, 단체의 재정자립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하거나 종결하게 되면, 대체로 단체가 해체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특별지원 방식은 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신뢰구축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2-3>과 같다.

<표 2-3> 정부 재정지원 유형의 장단점 비교

유형	자율성	재정충족	신뢰구축
공개경쟁	선정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정부가 원하는 서류작성 형식을 따라야 한다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지속성이 약하며 사업비 외의 지출이 불가능하다	자금사용의 실질적 심사에 한계가 있고 정책참여의 증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단독계약	대체로 정부가 사업유형과 방식을 정하지만 재정자립 정신을 크게 훼손하지는 않는다	지속성이 없지만 지원액이 많고 사업비 외경상비의 지출이 가능하다	정부정책 과정에 대한 참여가 확대되고 단체의 역량증진에 도움이 된다
단체설립 지원	정부간섭이 약하고 단체고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재정자립정신을 약화시킨다	단체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고 지속적이며 사업비 외의 사용이 가능하다	자금의 투명도가 높고 정부와 협력방식이 발달하지만 시민사회의 비판이 강하다
특별지원	정부 간섭이 심하고 재정자립정신을 약화시킨다	단체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지속성이 있지만 사업비 외 지출이 불가능하다	정부에 종속되고 시민사회로부터 커다란 불신을 받는다

문헌출처: 박상필(2008: 210)

III. 서울시 NGO 지원사업의 분석

1. 선행연구의 검토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NGO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자체에서 분석한 것은 없다. 2015년 한국지방발전연구원의 장계련 외(2015)가 서울시의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연구한 것이 있다. 장계련의 연구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 지원사업에 대해 관리절차에 한 문헌분석뿐만 아니라 서베이 및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시민단체 상근자 외에 서울시 재정지원 관련 공무원, 시민단체 재정지원 관련 전문가도 포함하였다. 다만 연구내용이 심사기준, 시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관계, 예산의 사용방향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민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장계련 외의 연구는 외국의 사례로써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부가적으로 외국사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기로 한다.

2. 지원사업의 관리과정 분석

가. 개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2017년을 예로 들어 분석하기로 한다.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제6조 및 제7조,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2017년에 시민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사업의 관리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었고, 단체의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이었다. 지원방식은 공모를 통해 심사하는 방식이었고, 지원대상은 서울시 또는 중앙정부의 주무부서에 등록되어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예산은 총 141개 단체에 22억 원을 지원하였다.

나. 사업일정

2017년에 서울시는 12개 사업유형에 대해 단체별 최고 3천만 원까지 총 22억 원을 지원하였다. 공고는 2017년이 시작하기 이전인 2016년 12월 30일에 공고하였고, 1월 26일 신청 접수일까지 약 1달 간 지속하였다. 공고는 서울시보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그리고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자를 발송하였다. 공고에는 신청대상 단체, 사업분야, 제출서류,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심사 및 선정 방법,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평가 및 정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고 이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2월에 심사를 통해 지원단체를 선정하였다. 사업설명회는 사업분야, 심사 및 선정 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신청서, 단체소개서,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다.¹²⁾ 심사는 서울시에서 구성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정해진 단계에 따라 실시하였다.

단체가 선정된 이후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실행 계획수립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한 다음, 3월 21일에 지원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심사결과에 의해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 NGO협력센터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고하였다.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은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실행 계획서 작성방법, 회계처리 기준 및 집행절차, 사업평가 기준 및 사업변경 승인절차,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이용방법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였다.¹³⁾ 사업실행 계획수립 컨설팅은 서울시 민관협력과에서 공익사업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컨설팅단의 전문위원이 사업계획을 분석한 후 선정단체를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약정체결은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를 비교 검토한 후에 실시하고,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 관리통장 등을 구비하도록 하였다.

약정을 체결한 이후, 3월말 1차 보조금을 교부하기 시작하여 10월까지 3회 분할하여 교부하였다. 1차 교부금이 나간 이후 4-5월에 걸쳐 단체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단체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핵심은 보조금 관리시스템 활용방법의 전산교육이었는데, 이 외에도 우수단체 사례 소개, 기부금품 모금 등을 포함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도 포함하였다. 2017년의 경우, 예정보다 늦게 9월에 <정보포럼>의 이름으로 개최하여 민관협치에 대한 강의, 우수사례 발표, 전문활동가 멘토링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포럼에는 시민단체 활동가 89명이 참석하였다.

8-9월에 걸쳐 현장방문 중간평가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11월 30일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12월에 사업비 정산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중간평가는 공익사업위원회의 위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평가단이 중간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서면 및 현장방문 실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물론 중간평가에는 사업목적 달성여부와 추진방법, 회계처리 실태, 기타 애로사항과 사업 관련 문제점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였다.¹⁴⁾ 사업비 정산에서는 회계검증을 통해 보조금의 사용 적정성을

12)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적, 목적달성을 위한 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13)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에서 신규단체에 대해서는 권력별로 7-10개 단체를 그룹화하여 별도로 방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추가 교육을 희망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따로 접수하여 심화교육을 실시하였다.

평가하였다. 여기서 집행 잔액을 확인하고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위반사항도 점검하였다. 물론 집행 잔액이나 부적정 집행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취하였다. 최종평가는 중간평가, 최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등을 모두 심사하는 것으로서 사업추진실적, 사업목적 달성 여부, 회계처리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이상 설명한 서울시 지원사업의 일정을 정리하면, 아래 <표 3-1>과 같다.

<표 3-1> 지원사업 일정(2017년)

일정	주요 업무	비고
2016. 12. 30	지원사업 공고	1월 26일 접수일까지 공고
2017. 1. 12	사업설명회 개최	
1. 13	사업계획서 접수	2주간 실시
2월	사업심사 및 단체선정	약 한달 간 실시
3. 6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선정단체 대상 실시
3. 7	사업실행 계획수립 컨설팅	3월 20일까지 실시
3. 21	선정단체 약정 체결	4일간 실시
3월말	1차 보조금 교부	10월말까지 3회 분할 교부
4월	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5월까지 선택적으로 실시
8월	현장방문 중간평가	9월까지 선택적으로 실시
11. 30	최종실적보고서 제출	
12월	사업비 정산 및 종합평가	차기년도 1월까지 진행

다. 지원사업 영역

사업유형은 해마다 바뀌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지정된 유형에 새로운 영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아래 <표 3-2>는 2016-17년의 사업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해마다 사업유형이 달라 2013년부터 5년 간 사업유형을 정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에는 전년도의 9개 유형(기타 포함)에 아동·청소년 지원, 외국인 노동자·이주민 지원, 도시재생 등 3개 사업영역이 새롭게 포함되었다(회색 부분). 2016년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영역 외에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 경우에는 개별 단체 외에 여러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관협력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2017년에는 민관협력 사업이 폐지되었다. 사업유형은 서울시 수도라는 점에서 통일·안보 영역처럼, 전국적 이슈와 관련된 사업유형도 있었다.

14) 중간평가 이전에 사업초기에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단체의 상황에 맞는 자문을 하기도 하였다.

<표 3-2> 지원사업 유형(2016-17년)

구분	2016년	2017년
자유분야	교통안전	문화·관광도시
	복지·인권신장	복지·인권신장
	시민의식 개선	아동·청소년 지원
	NGO 활동지원	시민의식 개선
	통일·안보	외국인 노동자·이주민 지원
	북한 이탈주민 지원	NGO 활동지원
	환경보전·자원재활용	교통안전
	문화·관광도시	통일·안보
	기타 공익사업	북한 이탈주민 지원
		환경보전·자원재활용
민관협력사업	공유서울 확산	
	무연고사망자 장례식	
	동물보호 시민의식 개선	
	NPO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불법 현수막 재활용전	
	마을과 함께 어린이 놀이터 만들기	

라. 사업선정 심사방법 및 기준

서울시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는 단체는 서울시가 공고한 내용에 맞추어 일정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사를 받게 된다. 단체는 1개의 사업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심사는 서울시에서 구성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실시하였다.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 심사는 아래 <표 3-3>과 같이, 3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전문가가 심사하는 단계로 위원이 개별적으로 심사하고 정성평가 위주로 심사하였다. 2단계는 7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분과위원회별로 심사하였는데, 전문위원들이 집단으로 정성 및 정량심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3단계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2단계에서 결정된 단체에 대해 지원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심사는 서류심사에 기초하여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개별심사와 집단심사 등을 결합하여 혼용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지원한 단체 중에서 서울시 또는 중앙부처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당연히 심사에서 제외되고, 전년도까지 3회 이상 지원한 단체, 지난해에 사업을 중

도 포기한 단체와 C 등급 평가를 받은 단체, 자부담 5% 이내의 단체는 심사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행정기관에 의해서 가능한 사업(예: 위생점검), 소모성 캠페인이나 이벤트, 단순 재정집행 사업(예: 책자발간), 사업수혜 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자산구입과 관련된 사업, 종교인 대상 사업, 경상비 위주의 사업, 서울시가 아니라 국제 및 전국적 규모이거나 자치구에 한정된 사업, 인적구성에서 유사단체에서 이중 신청한 사업은 제외된다. 2017년의 경우 434개 단체 중 이처럼 심사자격을 상실하여 심사에서 제외된 단체가 17개였다. 등록기관별로는 2017년의 경우, 서울시 등록 283개, 중앙부처 등록 141개 단체, 총 434개 단체였다.

<표 3-3> 지원사업의 심사방식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전문가 심사	분과위원회 심사	지원금액 심사
심사자	위원 개별	분야별 전문위원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심사방법	서류심사 (정성평가)	서류심사 (정성 및 정량 평가)	서류심사 (정성 및 정량 평가)
심사내용	사업내용	사업내용 (우선순위 결정)	지원금액 결정
위원구성	21명 공익위원15명+ 전문가6명	7개 분과위원회 분야별 공익위원2명+전문가1명	15명 공익사업선정위원회 15명

앞서 지적한 것처럼, 서울시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맡게 되는데, 공익사업선정위원의 구성방식은 조례로 정해져 있다. 2017-18년 2년 임기의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아래 <표 3-4>와 같다. 전체 15명 중 12명은 민간단체 추천이고, 3명은 서울시의회 추천이다. 전체적으로 남성이 9명, 여성이 6명이다. 민간추천의 경우 교수가 3명, 준공공기관장이 2명, 민간기관장이 3명, 회계사와 변호사가 각각 1명, 시민단체가 2명이다. 서울시의회 추천의 경우는 3명 모두 남성이고, 직업별로는 공무원이 2명, 민간기관장이 1명이다.

<표 3-4> 공익사업선정위원회(2017년)

구분	직업	인원수(명)
민간단체 추천	교수	3
	준공공기관장	2
	민간기관장	3
	전문직(회계사, 변호사)	2
	시민단체	2
	소계	12
서울시의회 추천	공무원	2
	민간기관장	1
	소계	3
계		15

심사의 기준은 아래 <표 3-5>와 같다. 전체적으로 단체역량(20점), 사업내용(50점), 예산타당성(25점), 자기부담 비율(5점)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여기에 전년도 우수평가(탁월) 단체에 대해서는 서울시(민관협력과)에서 일괄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지원금은 사업유형별 금액을 배분하여 S등급과 A등급으로 평가된 단체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금액을 조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등급은 가산점을 제외하고 S등급(90-100점), A등급(80-89점), B등급(70-79점), C등급(60-69점), D등급(51-59점) 등으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표 3-5> 지원사업의 심사기준

분야	심사항목	배점
사업단체	책임성 및 전문성	20
	최근 공익활동 실적	
	개발성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사업의 독창성	50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사업의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사업예산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25
자체부담	자체부담 비율	5
기타	전년도 결과평가(우수단체 가점)	5
계		105

마. 사업 진행 및 결과 평가방법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단체 선정이 끝나면, 선정된 각 단체는 사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평가는 아래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로 이루어진다.

중간평가는 8-9월에 중간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집행내역 보고서를 대상으로 하여 서면평가를 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대면평가를 한다.¹⁵⁾ 현장방문 때에는 사업현장,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방법, 회계처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사업진행상의 문제점에 대해 컨설팅도 한다. 평가자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와 민간의 전문가가 조를 이루어 함께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하반기 보조금 지급여부에 활용된다.

최종평가는 11월 말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 12월부터 시작하여 차기년도 1월까지 진행한다. 최종평가는 중간평가 결과와 최종실적 보고서, 정산보고서 등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추진 실적, 사업목적 달성여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을 서류평가 형식으로 실시한다. 평가자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될 뿐만 아니라, 차기년도 사업선정에 반영된다. 평가 결과 법령위반이 발견되어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된 금액을 회수할 뿐만 아니라 최고 5년 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

<표 3-6> 지원사업의 평가방식

구분	중간평가	최종평가
시기	8-9월	12월-차기년도 1월
평가방법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	서류평가
평가자	공익사업선정위원회+민간전문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평가대상	중간실적 보고서, 사업비 집행내역, 현장 브리핑	중간평가 결과, 최종실적 보고서, 정산보고서
평가내용	사업현장,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추진 방법, 회계처리 실태	사업추진 실적, 사업목적 달성여부, 회계처리 적정성
결과활용	하반기 보조금 지급여부	차기년도 사업선정 반영
기타	사업진행에 대한 컨설팅 병행	평가결과 인터넷 공개

바. 단체지원 및 예산규모의 추이

15) 현장방문은 중간평가 이전 사업초기에도 실시하는데, 이때에는 주로 사업진행에 대한 자문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13년 이후 서울시의 시민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단체의 신청 및 지원 추이는 아래 <표 3-7>과 같다. 신청단체는 대체로 350개 안팎인데, 2017년에 와서 434개로 크게 늘었다. 5년 간 연평균 신청단체 수는 371개였다. 선정되어 지원한 단체도 140개 안팎인데, 2014년에는 122개로 다소 적었고, 2017년에는 158개로 크게 늘었다. 5년 간 연평균 지원단체수는 142개였다. 선정비율은 대체로 2.4대 1에서 2.9대 1 사이였는데, 2014년과 2017년에는 경쟁률이 다소 높았다. 5년 간 연평균 경쟁률은 2.6: 1이었다.

<표 3-7> 지원사업의 단체 신청 및 지원 추이(2013-17년)

연도	신청단체수(개)	지원단체수(개)	경쟁율(%)
2013년	358	141	2.5: 1
2014년	354	122	2.9: 1
2015년	350	143	2.4: 1
2016년	361	144	2.5: 1
2017년	434	158	2.7: 1
평균	371	142	2.6: 1

2013년 이후 서울시의 시민단체 지원사업의 예산 및 단체별 평균지원금 추이는 아래 <표 3-8>과 같다. 지원사업 예산은 2014년에는 약 18억 원으로 적었고, 2013년에는 약 25억 원으로 많았다. 5년 간 연평균 예산은 약 22억 원이었다. 단체별 평균지원금은 예산이 많았던 2013년에 약 1,74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청단체수와 지원단체수가 많았던 2017년에는 약 1,39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평균적으로는 단체별 지원금은 약 1,540만 원이었다.¹⁶⁾

<표 3-8> 지원사업의 예산 추이(2013-17년)

연도	예산(천 원)	평균지원금(천 원)	단체수(개)
2013년	2,460,000	17,447	141
2014년	1,758,000	14,410	122
2015년	2,036,000	14,238	143
2016년	2,447,000	16,993	144
2017년	2,200,000	13,924	158
평균	2,180,200	15,402	142

16) 서울시의 시민단체 재정지원사업의 예산은 처음 시작한 2000년(16억 4천만 원)에서 2012년(21억 8천만 원)까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장계련 외, 2015: 40), 2013년 이후에는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매년 상황에 따라 변하고 있다.

2017년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금액을 사업유형별로 나누면 아래 <표 3-9>와 같다. 매년 사업유형이 달라서 연간 비교나 추이를 정리하는 것은 어렵다. 아래 표는 법정 단체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 것이다.

<표 3-9> 영역별 지원금(2017년)

구분	사업유형	2017년(백만 원)
자유분야	문화·관광도시	242
	복지·인권신장	318
	아동·청소년 지원	219.7
	시민의식 개선	179
	외국인 노동자·이주민 지원	85
	NPO 활동지원	93
	교통안전	175
	통일·안보	175
	북한 이탈주민 지원	128
	환경보전·자원재활용	225.3
	도시재생	62
	기타 공익사업	298
	계	2,200

구체적으로 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현황과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 <표 3-10>과 같다. 2013년 이후 5년 간 살펴보면, 1,000만 원 이상 1,5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5년 평균으로 보면 이 구간이 전체의 51.4%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1,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이 31.8%를 차지하였다. 1천만 원 미만이나 2,500만 원 이상은 매우 적었다. 2016년에 3,000만 원 이상 지원받은 단체가 8개 단체나 있었는데, 이때에는 경쟁시스템과는 별도로 특수한 사업에 대해 민관협력사업에 지원한 것이었다.¹⁷⁾

17) 3,000만 원 이상 지원한 8개 단체 중에서 3천만 원 1개 단체, 4,500만원 1개 단체, 5,000만 원 4개 단체, 6,500만원 2개 단체였다. 3천만 원이 넘는 8개 단체의 평균이 약 5천만 원이었다.

<표 3-10> 단체에 대한 지원금 현황 및 추이(2013-17년)

금액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1천만 원 미만	1	0.7	2	1.6	6	4.2	4	2.8	7	4.4	20	2.8
1,000-1,500만 원 미만	79	56.0	62	50.8	80	55.9	57	39.6	86	54.4	364	51.4
1,500-2,000만 원 미만	40	28.4	46	37.7	38	26.6	53	36.8	48	30.4	225	31.8
2,000-2,500만원 미만	19	13.5	10	8.2	19	13.3	21	14.6	17	10.8	86	12.1
2,500-3,000만 원 미만	1	0.7	1	0.8			1	0.7			3	0.4
3,000만 원 이상	1	0.7	1	0.8			8	5.6			10	1.4
	141	100	122	100	143	100	144	100	158	100	708	100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2회 이상 중복으로 지원받은 단체도 많았는데, 아래 <표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회 중복은 101개 단체, 3회 중복은 59개 단체, 4회 중복은 15개 단체였다. 중복으로 지원받은 단체의 연간 평균지원금은 2회 중복의 경우 약 1,440만 원, 3회 중복의 경우 1,540만 원, 4회 중복의 경우 1,620만 원 등으로 증가하였다. 5년 동안 단 1회만 지원받은 단체는 268개였는데, 평균 지원금은 약 1,400만 원이었다.

<표 3-11> 단체에 대한 중복지원금 추이(2013-17년)

구분	단체수(개)	평균지원금(천원)
1회 지원	268	14,023
2회 중복 지원	101	14,436
3회 중복 지원	59	15,442
4회 중복 지원	15	16,233

사. 지원단체에 대한 평가결과

서울시는 매년 연말에 재정지원을 한 단체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아직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최종평가가 나오지 않은 2017년을 제외하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간 지원단체에 대한 평가결과는 아래 <표 3-12>와 같다. 매년 양호가 가장 많고, 보통이 그 다음이었다. 그리고 탁월과 미흡은 적은 편이었다. 4년 전체적으로 보면 미흡(8%), 보통(26%), 양호(53%), 탁월(13%) 등이었다. 양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양호와 탁월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60%), 2014년(64%), 2015년(64%), 2016년(78%)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4년 전체적으로는 양호와 탁월이 약 67%를 차지하였다.

<표 3-12> 지원단체의 평가결과 추이(2013-16년)

결과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단체수(개)	비율(%)
미흡	14	7	5	14	40	8
보통	43	37	46	18	144	26
양호	63	59	73	98	293	53
탁월	21	19	19	14	73	13
계	141	122	143	144	550	100

2013-2016년 4년 간 지원금액별 단체에 대한 평가결과는 아래 <표 3-13>과 같다. 지원금은 4년 전체를 합칠 경우, 1,000-1,500만 원 사이가 278건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1,500-2,000만 원(32%), 2,000-2,500만 원(13%) 순이었다. 3천만 원 이상이 2,500-3,000만 원 구간보다 많은 것은 특정단체에 대한 전략적 지원 때문이었다. 이러한 전략적 지원은 특히 2016년에 8개 단체에 달했다.

<표 3-13> 지원금액별 평가결과 추이(2013-16년)

금액	결과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소계	계
1천만 원 미만	미흡					0	13
	보통	1	2	2		5	
	양호			3	3	6	
	탁월			1	1	2	
	소계	1	2	6	4	13	
1,000-1,500만 원 미만	미흡	7	6	3	3	19	278
	보통	28	21	28	8	85	
	양호	37	29	43	43	152	
	탁월	7	6	6	3	22	
	소계	79	62	80	57	278	
1,500-2,000만 원 미만	미흡	4	1	2	4	11	177
	보통	10	12	13	8	43	
	양호	17	22	19	35	93	
	탁월	9	11	4	6	30	
	소계	40	46	38	53	177	
2,000-2,500만원 미만	미흡	3			6	9	69
	보통	4	2	3	2	11	
	양호	7	6	8	11	32	
	탁월	5	2	8	2	17	
	소계	19	10	19	21	69	
2,500-3,000만 원 미만	미흡					0	3
	보통					0	
	양호	1	1		1	3	
	탁월					0	
	소계	1	1		1	3	
3,000만 원 이상	미흡				1	1	10
	보통					0	
	양호	1	1		5	7	
	탁월				2	2	
	소계	1	1		8	10	
	계	141	122	143	144	550	

아래 <표 3-14>는 2013-2016년 4년간 지원금액별 평가결과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양호와 탁월의 평가를 받은 단체만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았는데, 2013년에는 2,500만 원 이상이 전체 141건 중 2건밖에 되지 않아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지만, 대체로 금액이 높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았다. 2,500만 원 이상 2건은 모두 양호/탁월(100%)을 받았다. 반면에 1천만 원 미만에서는 양호/탁월이 없었고, 1,000-1,500만 원

구간에서 양호/탁월의 평가를 받은 건수도 55.7%(44/79)로써 1,500-2,000만 원(65.0%, 26/40), 2,000-2,500만 원(63.2%, 12/19) 구간보다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2014년에도 대체로 비슷하여 지원금액이 높을수록 대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약간 달랐는데, 2,000-2,500만 원(84.2%, 16/19)에서 양호/탁월 평가를 받은 건수가 많은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지원금액이 높을수록 낮은 평가를 받았다. 즉, 양호/탁월의 평가를 받은 건수는 1천만 원 미만(66.7%, 4/6), 1,000-1,500만 원(61.3%, 49/80), 1,500-2,000만 원(60.5%, 23/38) 순이었다. 2016년에도 2,500만 원 이상 지원을 받고 대체로 높은 평가를 받은 8건을 제외하면, 대체로 지원금액이 높을수록 양호/탁월 평가를 받은 건수가 적었다. 즉, 양호/탁월 평가를 받은 단체는 1천만 원 미만(100%, 4/4)에서 1,000-1,500만 원(80.7%), 46/57, 1,500-2,000만 원(77.4%, 41/53), 2,000-2,500만 원(61.9%, 13/21)였다. 4년 전체를 합쳐서 살펴보면, 양호/탁월의 평가를 받은 건수가 1천만 원 미만(61.5%, 8/13), 1,000-1,500만 원(62.6%, 174/278), 1,500-2,000만 원(69.5%, 123/177), 2,000-2,500만 원(71.0%, 49/69) 등으로 대체로 지원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표 3-14> 지원금액별 양호/탁월 평가결과 추이(2013-16년)

금액	결과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소계	계
1천만 원 미만	양호/탁월			4 (66.7)	4 (100)	8 (61.5)	13
	소계	1	2	6	4	13	
1,000-1,500만 원 미만	양호/탁월	44 (55.7)	35 (56.5)	49 (61.3)	46 (80.7)	174 (62.6)	278
	소계	79	62	80	57	278	
1,500-2,000만 원 미만	양호/탁월	26 (65.0)	33 (71.7)	23 (60.5)	41 (77.4)	123 (69.5)	177
	소계	40	46	38	53	177	
2,000-2,500만원 미만	양호/탁월	12 (63.2)	8 (80.0)	16 (84.2)	13 (61.9)	49 (71.0)	69
	소계	19	10	19	21	69	
2,500-3,000만 원 미만	양호/탁월	1 (100)	1 (100)		1 (100)	3 (100)	3
	소계	1	1		1	3	
3,000만 원 이상	양호/탁월	1 (100)	1 (100)		7 (87.5)	9 (90.0)	10
	소계	1	1		8	10	
	계	141	122	143	144	550	

3. 지원사업에 대한 서베이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시민단체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2013-17년 5년 동안 재정지원 사업에 신청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물론 설문지에는 서울시의 관리과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 결과에 근거하여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사업의 관리과정 및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가. 설문조사의 개요

1) 설문조사의 목적

‘서울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설문’의 목적은 지난 5년 간 서울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한 총 1299개 단체의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본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효과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실태 파악은 서울시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설문조사 대상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서울시 시민단체 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한 단체의 수는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3년 358개 단체, 2014년 354개 단체, 2015년 350개 단체, 2016년 361개 단체, 2017년 434개 단체 등 총 1857개 단체였다. 이 중에서 2회 이상 신청한 단체 1299개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3) 조사의 방법 및 기간

설문지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협력을 얻어 단체의 리스트와 E-메일 주소를 확보한 다음, 온라인 조사 플랫폼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1299단체의 E-메일 주소로 서울시 의회의 협조 공문, 연구과제의 목적과 설문 활용에 대한 안내문, 온라인 설문지가 5회에 걸쳐 발송되었다. 따라서 설문에 응한 단체는 온라인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5차례(조사에 응한 단체를 제외한 단체에 대한 최종 발송 횟수)에 걸친 설문조사는 2017년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총 10일 간 진행되었다.

4) 설문조사의 내용

설문지는 서울시 재정지원사업의 관리과정 및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과 단체의 현황 및 특성을 묻는 내용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설문지는 부록 참조).

먼저 재정지원사업의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문하였다.

- 지난 5년 간 재정지원사업 신청 횟수 및 선정 횟수
- 지난 5년 간 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해에 신청하지 않은 이유
- 재정지원 선정에서 탈락했을 경우 탈락했다고 생각하는 이유
- 재정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절차에서 느끼는 문제점
- 재정지원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만족도
- 재정지원금에 대한 만족도
- 재정지원사업의 각종 관리과정(사업설명회부터 최종평가까지)의 효과성(만족도)
- 재정지원사업의 관리과정 중 컨설팅(실행계획수립 및 사업진행)의 효과성(만족도)
- 재정지원금의 시민단체 성장에 대한 효과성의 영역
- 재정지원사업의 서울시 및 시민단체 간의 관계에 영향 정도
- 기타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불만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다음으로 설문에 응한 단체의 현황 및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문하였다.

- 단체의 위치(서울의 구 단위)
- 단체의 설립년도
- 연간예산
- 회원수
- 상근자수(풀타임으로 계산)
- 자원봉사자수(풀타임으로 계산)
- 법인형태(임의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기타법인)
- 조직형태(협의형/연대체, 연합형, 단독형)
- 활동범위(세계, 전국, 서울시, 자치구, 마을)
- 활동영역: 대분류(주창활동, 서비스생산, 대안사회운동)
- 활동영역: 중분류(환경, 인권, 평화 등 20개 영역에서 2개 중복 선택)
- 단체 설립 목적

-단체 주요 사업(2017년)

나. 조사결과의 분석

1) 설문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온라인에 걸쳐 1299개 단체에게 5회에 걸쳐 발송한 설문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231개 단체가 응답하여 17.8%의 회수율을 보였다(231개 응답 단체 중 15개 단체가 부분으로 응답, 216개 단체가 전체적으로 응답). 여기서는 설문에 응한 231개 단체를 샘플로 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변수들의 기술통계분석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문항별 상관관계 분석(카이스퀘어 검정)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여기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p\text{-value}<0.05$)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상관분석(카이스퀘어 검정)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STATA ver.12를 사용하였다.

2) 단체의 주요 현황 및 특성

① 단체 소재지

설문에 응답한 단체들이 소재한 지역은 서울 25개 구 모두 분포되어 있으나, 아래 <표 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로구가 31개 단체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 마포구(24개)가 많았다. 두 지역에 소재한 단체는 55개로 전체 231개 단체의 23.8%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영등포구(17개), 용산구(17개), 강남구(17개), 서초구(13개), 은평구(11개), 송파구(11개), 구로구(10개) 순이었다. 반면에 중랑구와 성동구에 소재한 단체는 각각 1개 단체, 강북구와 도봉구에 소재한 단체도 각각 2개에 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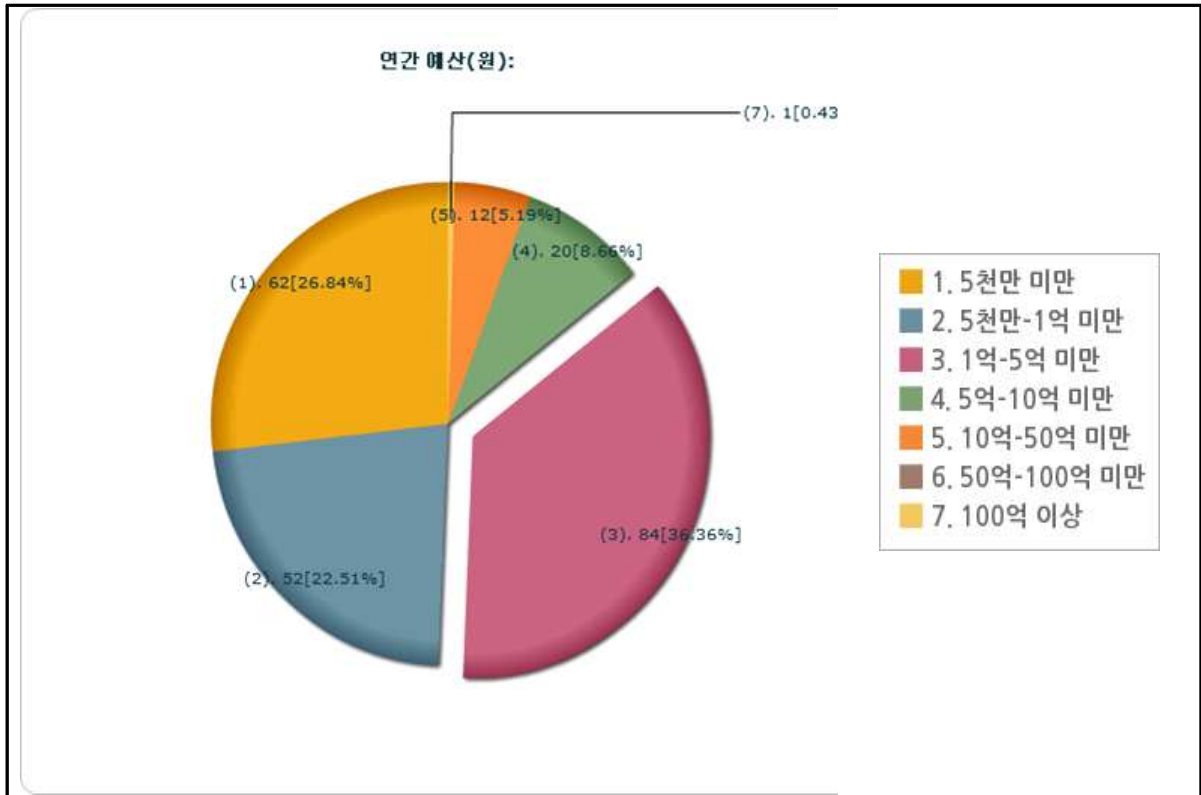
<표 3-15> 단체의 소재지

자치구명	단체 수	자치구명	단체 수
종로구	31개	마포구	24개
영등포구	17개	용산구	17개
강남구	17개	서초구	13개
은평구	11개	송파구	11개
구로구	10개	광진구	9개
동대문구	8개	동작구	8개
중구	8개	성북구	7개
서대문구	6개	양천구	6개
관악구	5개	노원구	5개
강서구	4개	강동구	4개
금천구	4개	강북구	2개
도봉구	2개	종량구	1개
성동구	1개		

② 연간예산

단체의 연간예산에 대한 조사에서는 설문에 응한 231개 단체 중에서 연간예산이 1억 원-5억 원 미만인 단체가 84개 단체로 전체의 36.4%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5천만 원 미만(62개, 26.8%), 5천만 원-1억 원 미만(52개, 22.5%), 5억 원-10억 원 미만(20개, 8.7%), 10억 원-50억 원 미만(12개, 5.2%), 100억 이상(1개, 0.4%) 순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3-16>과 같다. 연간예산이 1억 원 미만인 단체가 114개로 전체의 약 49.3%를 차지하여 절반에 가까웠다. 따라서 연간예산이 10억 원 넘는 단체도 13개에 이르고, 심지어 100억 원이 넘는 단체(1개)도 있지만, 대체로 서울시 시민단체의 재정 은 영세한 편이었다.

<표 3-16> 단체의 연간예산



③ 회원, 상근자, 자원봉사자 수

아래 <표 3-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단체의 평균 회원 수는 약 5만여 명, 상근자 수는 6명, 자원봉사자 수는 185명으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상근자와 자원봉사자 수에서 파트타임은 풀타임으로 계산하였음). 그러나 회원 수의 경우 1개 단체(‘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가 1천만 명을 회원으로 기입하였고, 자원봉사자 수도 1개 단체가 13,727명으로 기입하였다. 즉, 표준편차에서 나타나듯이 단체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여기서 평균값은 큰 의미가 없고, 중간값을 보면 회원은 300명, 상근자는 3명, 자원봉사자는 5명 정도로써, 특수한 몇 개의 단체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단체의 규모에서도 소규모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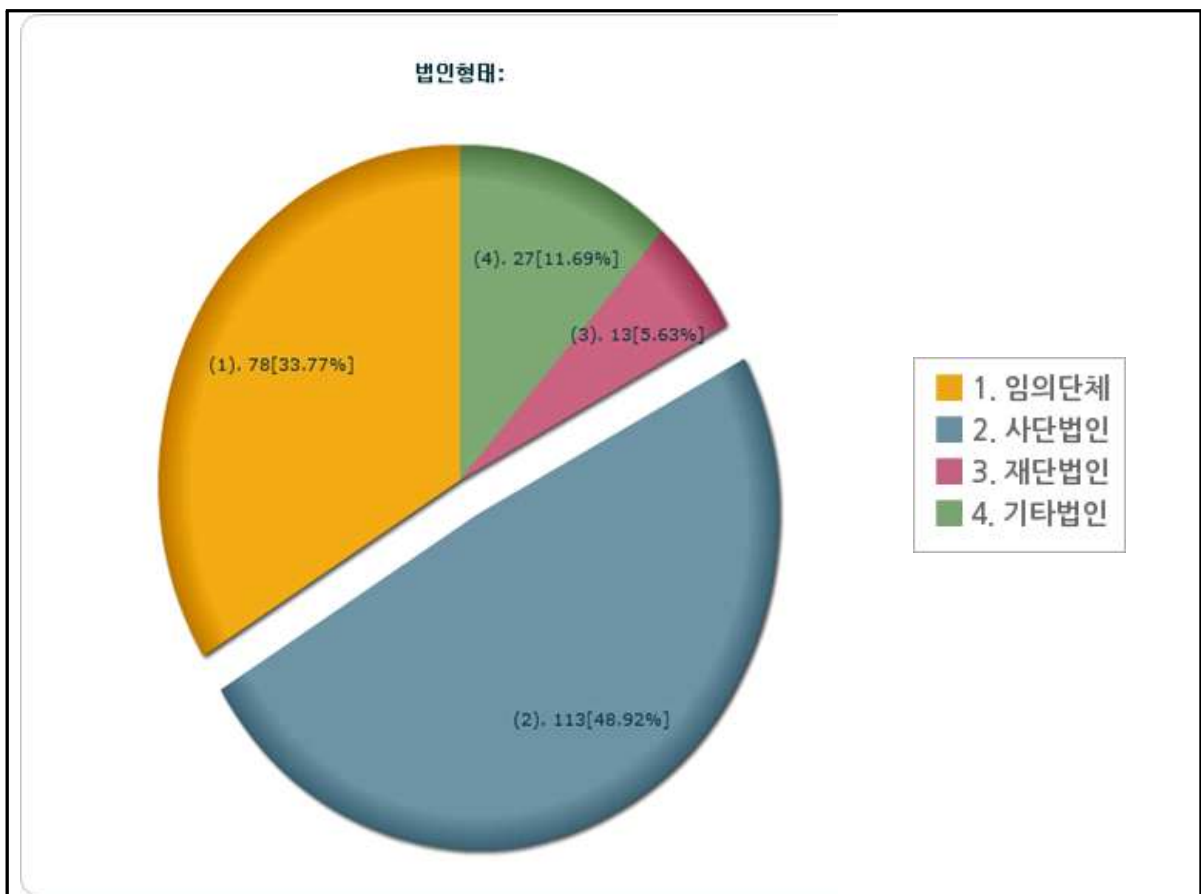
<표 3-17> 단체의 회원수, 상근자수, 자원봉사자수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중간값
회원수	50272.13	659382	10000000	300
상근자수	6.4416	17.08	196	3
자원봉사자수	184.5478	1210.338	13727	5

④ 법인형태

아래 <표 3-1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응답한 231개 단체 중에서 사단법인이 113개 단체로 전체의 48.9%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임의단체(78개, 33.8%), 기타법인(27개, 11.7%), 재단법인(13개, 5.6%) 순이었다. 재단법인의 수는 적지만, 법인의 수가 임의단체를 앞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단체의 조직화와 공식성은 어느 정도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대부분의 단체들이 임의단체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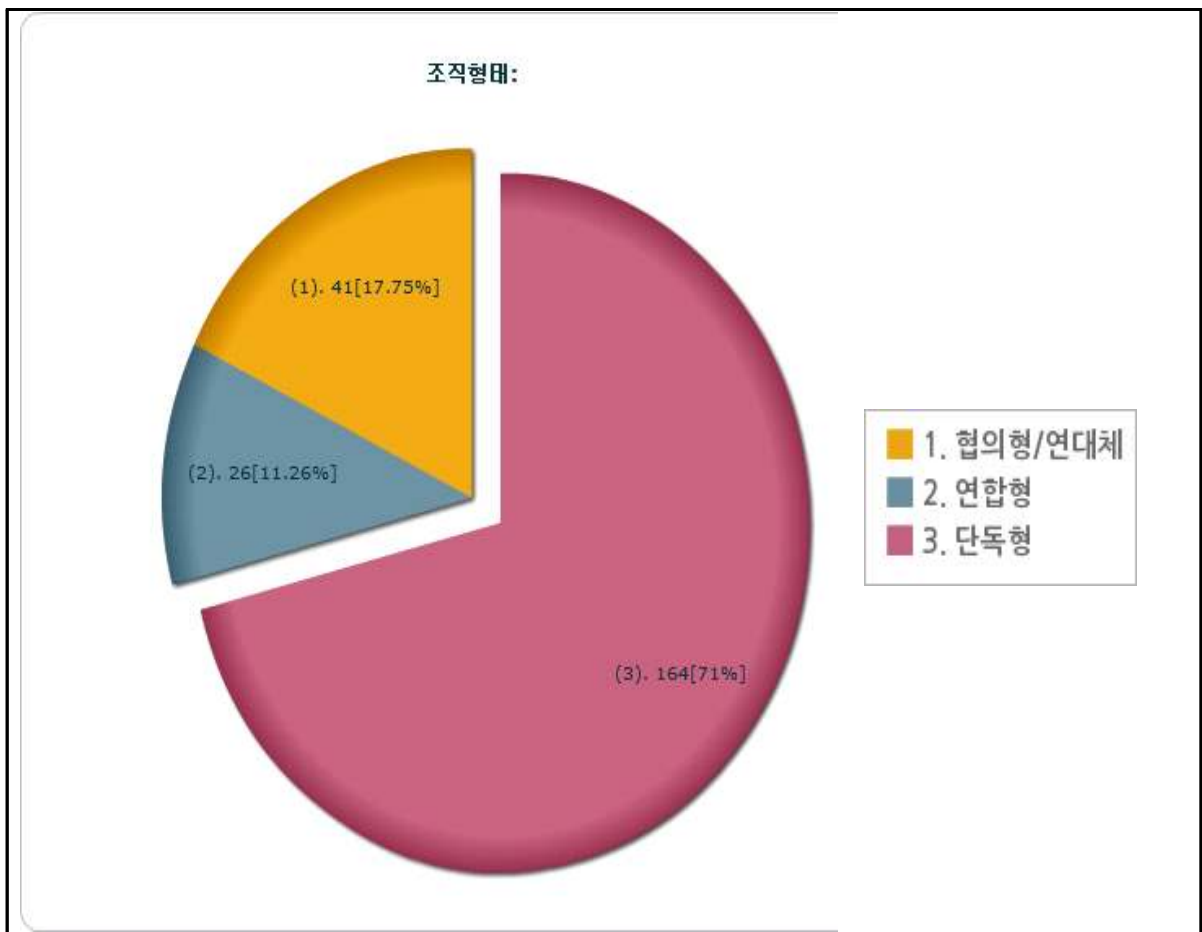
<표 3-18> 단체의 법인형태



⑤ 조직형태

응답한 231개 단체 중에서 조직형태로 살펴본 결과, 아래 <표 3-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독형이 164개 단체로써 전체의 71.0%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협의형/연대체가 41개 단체(17.7%), 연합형이 26개 단체(11.3%)로 나타났다. 단독형이 가장 전형적인 조직형태를 이루었지만, 예상보다 많은 협의형/연대체가 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단체의 조직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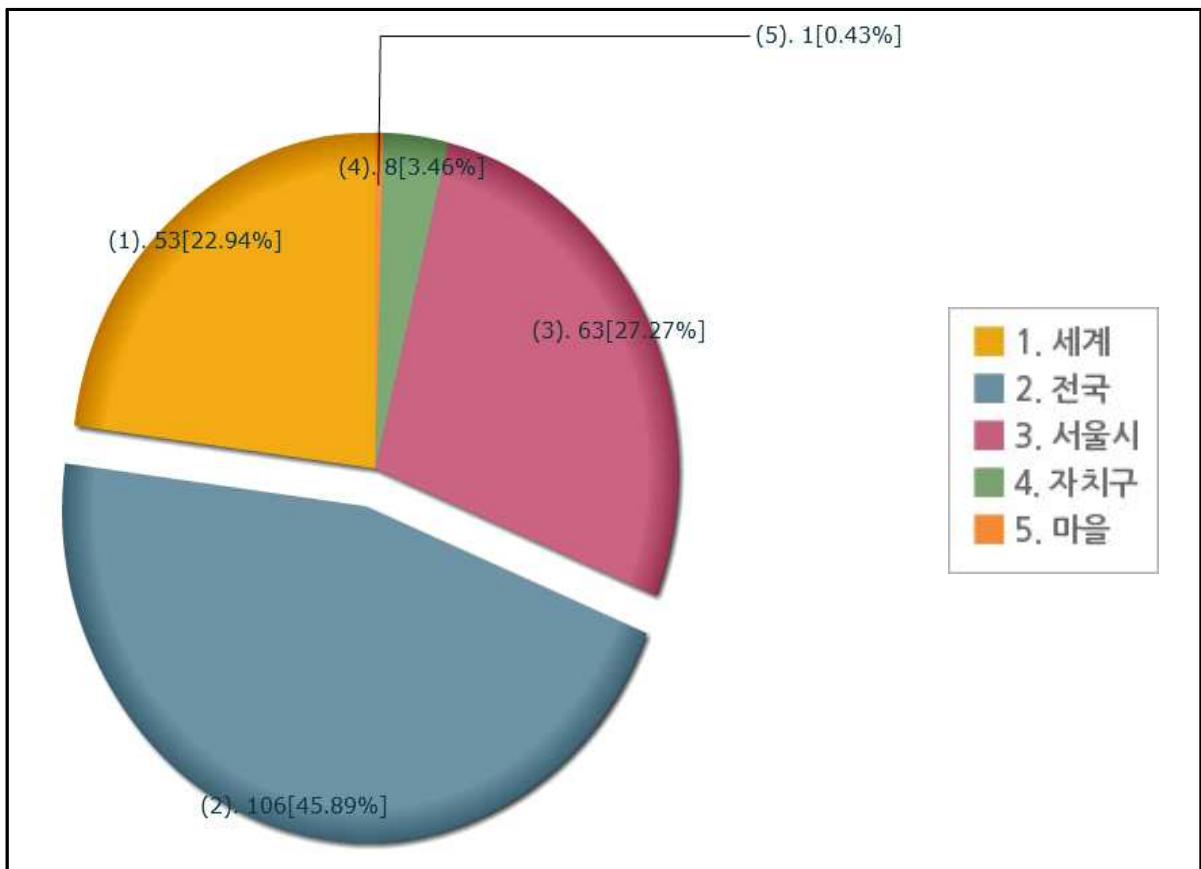


⑥ 활동범위

응답한 231개 단체 중에서 단체의 활동범위는 전국 단위가 106개 단체로써 전체의 45.9%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서울시 단위(63개, 27.3%), 세계 단위(53개, 22.9%),

자치구 단위(8개, 3.5%), 마을 단위(1개, 0.4%)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단위가 약 46%로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고 세계 단위까지 합치면, 231개 단체 중 159개 단체로써 전체의 약 69%를 차지하였다. 반면에서 자치구나 마을 단위는 9개 단체로써 전체의 약 4%만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사업이 서울시의 재정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단체들의 활동 범위는 서울시 및 자치구 공간 단위를 넘어선 전국 및 세계 단위의 단체들이 68.8%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단체의 활동범위에 자세한 분포도는 아래 <표 3-20>과 같다.

<표 3-20> 단체의 활동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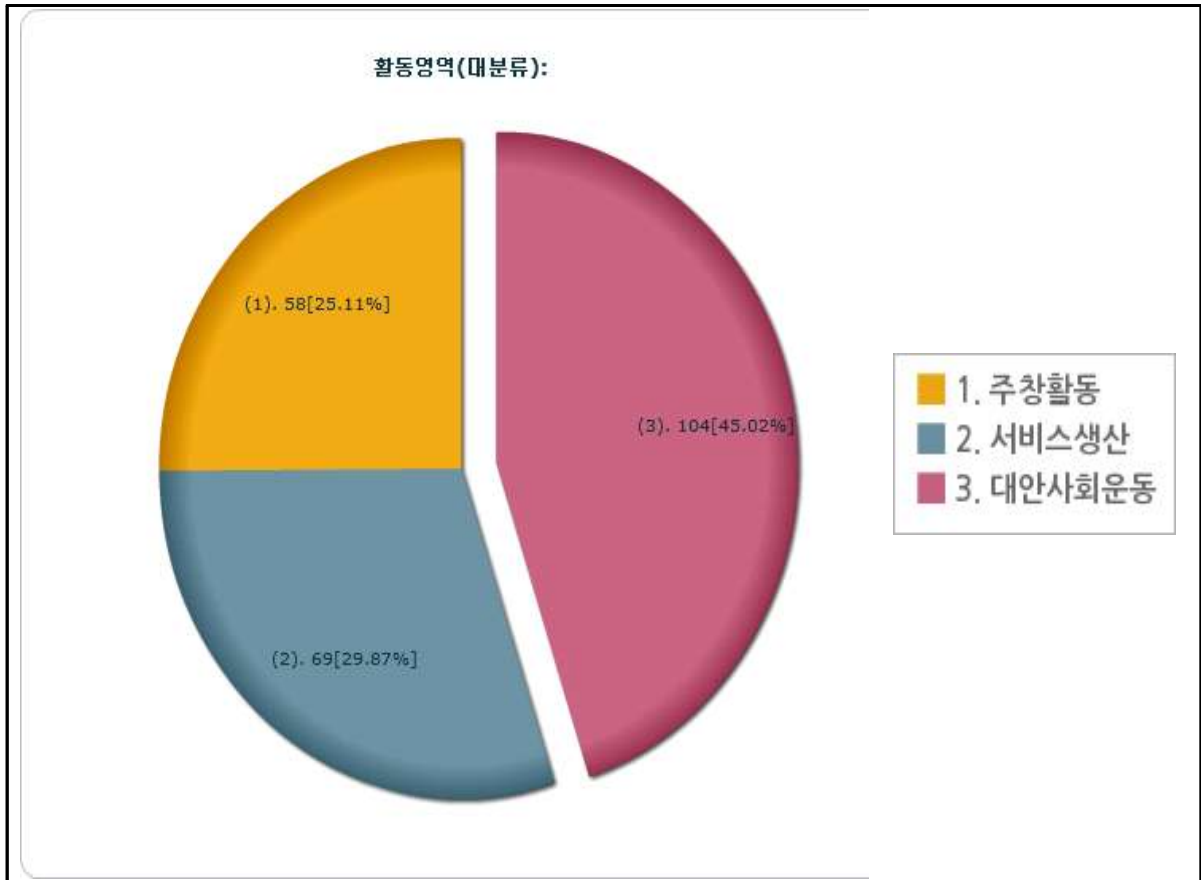


⑦ 활동영역

아래 <표 3-2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응답한 231개 단체들의 활동영역(대분류)에서 104개 단체가 대안사회운동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5.0%). 그 다

음으로 서비스생산(69개, 29.9%), 주창활동(58개, 25.1%) 순으로 나타났다. 대안사회운동이 많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대안사회운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아 응답자의 관점이 다양할 수 있지만, 스스로 대안사회운동이 주요한 활동영역으로 보고 있는 단체가 많다는 사실은 발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3-21> 단체의 활동영역(대분류)



한편, 단체의 활동영역을 20개 영역으로 중분류할 경우에는 2개 중복으로 응답한 421개 단체 중 교육/연구 분야가 전체 73개(17.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환경(45개, 10.7%), 복지(43개, 10.2%), 문화/체육(41개, 9.7%), 청년/아동 분야(39개, 9.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노동/빈민(2개, 0.5%), 온라인 활동(2개, 0.5%), 모금/추모 분야(3개, 0.7%)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 3-22>와 같다.

<표 3-22> 단체의 활동영역(중분류)

활동영역	단체 수(개)	비율(%)	자치구명	단체 수(개)	비율(%)
환경	45	10.7	소비자권리	7	1.7
인권	21	5.0	도시/가정	4	1.0
평화/통일	31	7.4	노동/빈민	2	0.5
여성	10	2.4	외국인	13	3.1
정치/경제	8	1.9	모금/추모	3	0.7
교육/연구	73	17.3	자원봉사	25	5.9
의료/보건	12	2.9	국제협력	17	4.0
문화/체육	41	9.7	대안사회	11	2.6
복지	43	10.2	온라인활동	2	0.5
청년/아동	39	9.3	기타	14	3.3

3) 서울시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① 재정지원사업의 신청

2013-17년 5년 동안 서울시 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한 횟수에 대한 질문에 대해 5회 모두 신청한 단체가 51개로써 전체의 22.1%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3회와 2회가 각각 49개(21.2%)로 뒤를 이었다. 대체로 신청 횟수에서는 고루 분포되어 있는 편인데, 2회 이상 신청한 단체가 182개 단체로써 전체의 78.8%에 해당하였다. 신청한 횟수에 대한 자세한 분포도는 아래 <표 3-23>과 같다(이 설문은 재정지원 신청 경험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신청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15개 단체는 응답 오류인 것으로 보임).

<표 3-23> 재정지원사업의 신청 횟수

1. 모두 신청(5회)	22.08 %	51 명
2. 4회	14.29 %	33 명
3. 3회	21.21 %	49 명
4. 2회	21.21 %	49 명
5. 1회	14.72 %	34 명
6. 신청한 적 없음	6.49 %	15 명

한편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아래 <표 3-2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원제도를 모른다는 이유가 41개로써 전체의 17.8%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신청 조건이 되지 않거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역량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단체도 모두 합쳐 80개로써 전체의 34.6%에 해당하였다.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는 24개 단체로써 10.4%였다. 기타에 응답한 단체가 86개 단체로써 많은 편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아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표 3-24> 재정지원사업 신청하지 않은 이유

1. 재정지원 제도를 몰라서	17.75 %	41 명
2. 신청조건이 안되어서	17.75 %	41 명
3. 신청 준비나 역량이 부족해서	16.88 %	39 명
4. 정부 지원금이 적어서	10.39 %	24 명
5. 기타	37.23 %	86 명

② 사업지원의 선정

아래 <표 3-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5년 간 서울시 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지원에 선정된 횟수는 1회가 59개(25.5%)로써 가장 많았다. 5회 모두 선정되었다고 응

답한 단체도 17개 단체나 되었는데, 서울시의 방침은 전년도까지 3회 이상 지원한 단체는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5회 선정되었다고 답한 단체는 응답 오류인지, 아니면 별도의 협력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어렵다. 선정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단체도 42개로써 전체의 18.2%를 차지하였다.

<표 3-25> 사업지원의 선정 횟수

1. 모두 선정(5회)	7.36 %	17 명
2. 4회	9.52 %	22 명
3. 3회	16.02 %	37 명
4. 2회	23.38 %	54 명
5. 1회	25.54 %	59 명
6. 선정된 적 없음	18.18 %	42 명

한편, 단체의 지원사업 선정과 예산규모 간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3-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체의 예산규모가 작을수록 선정되는 횟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예산이 많은 단체에 대해 선정 과정이나 결과 심사과정에서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26> 선정횟수와 단체의 예산규모와의 상관관계1

구분	5천만원 미만	1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50억 미만	50억-100억 미만	100억 이상	Total
선정된적 없음	19	7	11	5	0	0	42
1회	18	9	24	4	3	1	59
2회	12	13	22	4	3	0	54
3회	9	15	7	5	1	0	37
4회	3	6	9	1	3	0	22
5회	1	2	11	1	2	0	17
Total	62	52	84	20	12	1	231

Pearson chi2(25) = 40.0139 P-value = 0.029

단체의 예산규모가 작을수록 지원사업의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래 <표 3-2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선정된 적 있음과 없음으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체의 예산규모가 작을수록 선정된 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7> 선정횟수와 단체의 예산규모와의 상관관계2

구분	5천만원 미만	1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50억 미만	50억-100억 미만	100억 이상	Total
선정된적 없음	19	7	11	5	0	0	42
선정된적 있음	43	45	73	15	12	1	189
Total	62	52	84	20	12	1	231

Pearson chi2(5) = 12.2277 Pr = 0.032

지원사업의 선정횟수와 단체의 활동분야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으

나, 여성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경우 사업 선정에 있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아래 <표 3-2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여성권리 분야의 단체는 다른 분야의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정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8> 선정횟수와 단체의 활동분야와의 상관관계(여성단체와 기타단체)

구분	선정된적 없음	1회	2회	3회	4회	5회	Total
여성 분야	2	0	2	3	0	3	10
그 외 분야	40	59	52	34	22	14	221
Total	42	59	54	37	22	17	231

Pearson chi2(5) = 12.2915 P-value = 0.031

또한 사업의 선정횟수는 사업의 신청횟수와도 일정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 <표 3-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횟수가 많을수록 선정되는 횟수도 늘어나서 양자는 정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신청횟수가 늘어나면 선정되는 횟수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어 커다라 의미는 없지만, 단체들이 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할수록 정보획득 및 서류작성에 대한 능력이 증진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표 3-29> 신청횟수와 선정횟수 간의 상관관계

사업 신청 횟수	사업 선정 횟수						Total
	0 회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	
0 회	15	0	0	0	0	0	15
1 회	8	26	0	0	0	0	34
2 회	12	14	22	0	0	1	49
3 회	5	7	18	19	0	0	49
4 회	0	7	9	6	11	0	33
5 회	3	6	3	12	11	16	51
Total	43	60	54	37	22	17	231

Pearson $\chi^2(25) = 250.5326$ Pr = 0.000

신청하여 선정되지 못하고 탈락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높은 경쟁률 때문이라고 응답한 단체가 74개로서 전체의 32.0%를 차지하였다. 스스로 단체의 역량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나 심사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단체는 각각 27개(11.7%)로써 그리 많지 않았다. 기타에 응답한 단체 103개로 매우 많은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몇몇 단체에 대한 개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단체역량 부족(기획서 작성역량 및 재정역량 부족)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자세한 응답 분포도는 아래 <표 3-30>과 같다.

<표 3-30> 사업선정에서 탈락한 이유

1. 단체역량 미흡	■ 11.69 %	27 명
2. 높은 경쟁률	■ 32.03 %	74 명
3. 심사의 불공정	■ 11.69 %	27 명
4. 기타	■ 44.59 %	103 명

③ 재정지원 사업의 신청 및 선정의 문제점

아래 <표 3-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재정지원사업의 신청 및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2개 중복 응답 가능한 형태로 질문한 결과, 인건비 지급 불가에 대해 응답한 단체가 전체 409개 중에서 88개로써 21.5%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까다로운 서류절차(83개, 20.3%), 높은 경쟁률(64개, 15.7%), 단일년도 지원(51개, 12.5%) 순이었다. 한편 기타(21개, 5.1%) 중에, 추가 인터뷰를 통해 미선정이 됐을 경우에 부족한 사항과 보완할 사항에 대한 피드백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표 3-31> 지원사업의 신청 및 선정의 문제

1. 심사 불공정	8.07 %	33 명
2. 높은 경쟁률	15.65 %	64 명
3. 지원금 부족	14.91 %	61 명
4. 인건비 지급 불가	21.52 %	88 명
5. 까다로운 절차 및 서류작성	20.29 %	83 명
6. 단일년도 지원	12.47 %	51 명
7. 홍보부족, 불친절	1.96 %	8 명
8. 기타	5.13 %	21 명

한편,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 231개 중에서 대체로 공정하다고 본 응답이 102개로써 전체의 44.2%를 차지하였다. 매우 공정하다고 응답한 18개(7.8%)까지 합치면 공정하다고 보는 응답이 120개로써 전체의 52%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공정하지 못하거나(18개, 7.8%),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13개, 5.6%)라고 응답하여 공정성에 불만을 갖는 단체는 31개 단체로써 전체의 13.4%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심사 과정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는 커다란 불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선정심사 과정의 공정성 만족도에 대한 응답의 자세한 분포도는 아래 <표 3-32>와 같다.

<표 3-32> 선정과정의 공정성 만족도

1. 매우 공정	7.79 %	18 명
2. 대체로 공정	44.16 %	102 명
3. 보통	34.63 %	80 명
4. 공정하지 못함	7.79 %	18 명
5. 매우 공정하지 못함	5.63 %	13 명

④ 지원금액의 수준

아래 <표 3-3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원금액의 수준에 대한 만족도 질문에서는 전체 231개 단체 중에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단체가 116개로써 전체의 50.0%를 차지하였다. 불만족(57개, 24.7%)과 매우 불만족(15개, 6.5%)을 합치면 72개로써 전체의 31.2%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만족(37개, 16.0%)과 매우 만족(6개, 2.6%)을 합친 43개 (18.6%)보다 높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지원금액에 대한 불만족의 수준이 높았다.

<표 3-33> 지원금액 수준의 만족도

1. 매우 만족	2.6 %	6 명
2. 만족	16.02 %	37 명
3. 보통	50.22 %	116 명
4. 불만족	24.68 %	57 명
5. 매우 불만족	6.49 %	15 명

한편, 아래 <표 3-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원금액의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단체의 예산규모와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단체의 예산규모가 작을수록 지원금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것은 예산규모가 작은 단체일수록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단체

의 사업이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34> 단체예산과 지원금액 수준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구분	5천만원 미만	1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50억 미만	50억-100억 미만	100억 이상	Total
매우만족	6	3	4	0	2	0	15
만족	15	10	19	10	3	0	57
보통	33	29	40	9	5	0	116
불만족	7	9	19	1	0	1	37
매우 불만족	1	1	2	0	1	0	6
Total	62	52	84	20	12	1	231

Pearson chi2(25) = 33.2968 Pr = 0.031

⑤ 관리과정의 효과성

아래 <표 3-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 재정지원사업의 관리과정(사업설명회,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중간 및 최종 평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을 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보통이 102개 단체로써 44.2%를 차지하였지만, 효과성이 높다(높다, 매우 높다)가 45.0%(104개)로써 낮음(낮다, 매우 낮다)의 10.8%(25개)보다 훨씬 높았다.

<표 3-35> 지원사업 관리과정에 대한 만족도

1. 매우 높다	6.93 %	16 명
2. 높다	38.1 %	88 명
3. 보통	44.16 %	102 명
4. 낮다	7.79 %	18 명
5. 매우 낮다	3.03 %	7 명

이어서 관리과정에서 실행계획 수립이나 사업진행에 대한 컨설팅의 효과에 대해서도 아래 <표 3-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통이 113개 단체로써 48.9%를 차지하였지만, 높음(높다, 매우 높다)이 73개 단체로써 32.5%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낮음(낮다, 매우 낮다)은 43개 단체로써 18.6%를 차지하였다. 물론 컨설팅의 효과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앞서 일반적 관리과정의 효과성의 만족도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다.

<표 3-36>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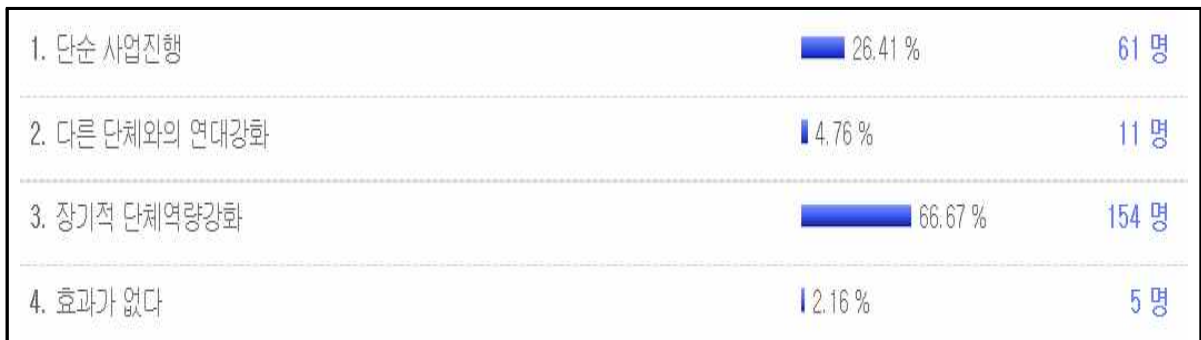
1. 매우 높다	5.63 %	13 명
2. 높다	26.84 %	62 명
3. 보통	48.92 %	113 명
4. 낮다	12.55 %	29 명
5. 매우 낮다	6.06 %	14 명

⑥ 재정지원사업의 효과 영역

서울시의 재정지원사업이 어떤 영역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 아래 <표 3-3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한 231개 단체 중에서 154개 단체(66.7%)가 장기

적 단체역량 강화라고 꼽았다. 그 다음으로 단순 사업진행(61개, 26.4%)이 그 뒤를 이었다.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단체가 5개(2.2%)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서울시의 재정지원사업은 일정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단순 사업진행에 대한 효과에 비해 장기적 단체역량 강화에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크게 앞섰다.

<표 3-37> 지원금의 효과 영역



한편, 서울시의 재정지원사업이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래 <표 3-3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상호협력 및 신뢰에 기여한다고 응답한 단체가 184개로써 전체의 79.7%를 차지하였다. 견제능력을 위축시킨다고 보는 단체는 12개 단체(5.2%)에 불과하였다. 물론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단체도 35개 단체로써 전체의 15.2%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볼 때, 서울시의 재정지원사업은 단체의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서울시정부 간의 신뢰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8>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사업의 효과



4) 기타 불만사항 및 건의사항

설문지에서는 별도로 불만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였는데(문항 12번), 여기서는 응답한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내용을 간단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여기에 제시된 의견을 앞서 설문지에서 분석한 것과 상충하는 것도 있다.

① 지원금의 사용 및 지원금액

서울시 재정지원사업에 관해 가장 많이 제기된 불만사항은 지원금의 인건비 사용 불허에 대한 것이었다. 지원금의 인건비 사용문제는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시민단체 지원사업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시민단체에서 제기된 문제이다. 그리고 단체 상근자들과의 토론에서도 가장 문제 있는 것으로 제기되었다. 인건비사용 불가는 소규모 시민단체의 경우, 상근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

서울시 재정지원사업에서 개별 단체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작다는 의견도 많았다. 따라서 지원금을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원기간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다. 서울시 재정지원사업은 단년도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다년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예산규모가 작은 단체는 정부의 지원금이 끊어질 경우, 사업이 중도에서 중지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년도 지원방식을 요청하였다.

사업에 선정된 이후, 지원금이 감액됨으로써 원래 목표로 한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상근자들과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다. 따라서 사업의 내용에 따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사업 선정 및 심사

사업의 선정심사에서 단체 간의 역량에 따른 불만 표시가 있었는데, 이것은 소규모의 단체가 신청 준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불공정하다고 보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의 심사과정 개입에 대한 불만의견도 몇 명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심사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는 앞서 지적한 바 있지만, 여기서도 의견이 제시되었다. 자신의 탈락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유를 알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에 신청을 준비할 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울시의 재정지원사업의 영역은 해마다 약간 신축성이 있기는 하지만, 커다란 차이가 없다.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지원분야가 있었으면 좋겠

다는 의견이 있었다.

③ 행정절차의 간소화

서울시의 재정지원사업 관리절차가 촘촘하게 얽혀 일정하게 단체들에게 이점을 주는 점도 있지만, 부담이 되는 단체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육절차가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거나, 더구나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획일적 자문의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행정절차의 간소화에 대해서는 상근자들과 토론회에서도 제기되었다.

서울시의 재정지원사업에서 신청과정에 필요한 서류준비, 결과보고에 대한 회계자료 준비가 과도하고 복잡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상근자가 많지 않은 단체로서는 상당한 업무의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정산서류의 간소화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서류처리 작업을 제 때에 하지 못하거나, 질문이나 요청사항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④ 기타

이 외에도 사업공고 기간의 확대하여 많은 단체들이 정보를 획득하고 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신청기간의 확대를 통해 신청을 위한 서류작업 및 자료준비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또한 컨설팅 과정 중에 시장의 정치적 신념과 일치 여부에 대한 확인, 정치적 편향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 있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고, 특정 단체(희망제작소)의 홍보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견 제시도 있었다.

상근자들과 간담회에서는 우수단체의 사례를 발표하고 사업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는 정보포럼이 유용하기 때문에 연 1회에 그치지 않고 2-3회 하자는 의견도 많이 제시되었다.

4. 지원사업 관련 법령의 분석

가. 개요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정부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하기가 쉽지 않지만, 현재 한국 시민사회의 상황으로 본다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

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 중에서 법령의 제정을 통해 시민단체가 각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형성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는 공식적으로 법률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시민사회의 각종 민간단체 공익활동을 지원할 때, 법률을 통한 규제와 조세 및 보조금 정책, 직접 사회서비스 제공과 같은 정책을 구사한다(Le Grand, et al., 1999). 정책이 기본적으로 법률의 형식을 갖는다는 점에서 법은 일종의 ‘정책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이시원·김주찬, 2005; 박영도, 2005). 한국에서 법은 시민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물적 기반을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자원적(voluntary)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기회를 제공하거나 일정한 규제를 한다(박상필, 2008: 278-80).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도 대부분 각종 법령에 근거하고 있다.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법령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시민단체 지원 및 민간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은 법이다. 지원 대상이 보편적이며, 직접적인 재정 지원 외에 행정지원과 같은 간접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특정한 단체의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등과 같은 3개 단체에 대한 특별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원 대상은 특정 단체로 한정되어 있지만, 지원 내용은 역시 직·간접 지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셋째,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런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여기서는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관리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과 같은 법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외에도 서울시 차원에서 제정된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1)와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조례2),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조례3) 등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법령의 의미와 문제점을 분석하도록 한다.

관련된 법령의 명칭, 제정일자, 주관 부처, 제정목적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 3-39>와 같다.

<표 3-39> 시민단체 재정지원 관련 법령의 비교

명칭	제정일	주관부처	제정목적	시민단체 지원관련 주요내용
지방재정법	법률 제1443호, 1963.11.11. 제정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 <개정 2016. 5 .29.>	민간단체 경상비 보조 법적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1호 1963.11.1 제정	기획재정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 <전문개정 2011. 7. 25.>	민간단체 경상비 운영의 법적 근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법률 제6118호, 2000.1.12. 제정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	비영리민간단체 사업비 지원, 조세감면, 우편요금 지원 등의 직간접 지원의 근거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4919호 2010.1.7. 제정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공익사업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493호 2013.5.16. 제정	서울시	서울특별시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	시민공익활동 촉진위원회 설치·구성·운영 관련 사항, 서울시NPO지원센터 설치·기능·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6540호 1988.5.7. 제정	서울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기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2015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폐지)	법률에 규정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집행, 평가, 교부결정, 취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법령의 분석

1) 지방재정법

① 입법과정과 의미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1963년 11월 11일에 제정되었다. 보조금의 지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 지방재정법이다.

2014년 지방재정법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개정되어, 지방의 시민운동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있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민간단체 선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 불명확한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운영되던 특정단체에 대한 중복·편중 지원 등 자의적 보조금 교부 관행을 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그러나 기존에 각 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근거로 비영리민간단체에 교부되어 오던 운영비 지원의 중단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과 거버넌스를 통해 운영비 지원을 받던 지역의 풀뿌리단체나 중간지원조직들이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았다(박영선, 2015: 140-41).

② 시민단체 지원 관련 주요 내용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지방재정법 중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제32조의 2부터 제32조의 10까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신설 규정을 두었다.

-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함(제32조의2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등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원칙적으로 공모 절차에 따르도록 함(제32조의2 제3항, 제4항, 제32조의3).
-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위반하면 지방보조사업을 일시 정지시키도록 함(제32조의4, 제32조의5).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제32조의7).

-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는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제32조의8, 제32조의9)

위와 같은 지방재정법의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 운영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권고(2012. 11)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민간단체 선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 불명확한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른 특정단체에 대한 자의적 보조금 교부 관행(중복·편중 지원 등) 등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위와 같은 법 개정 과정에서, 조례 등을 통해 민간단체에 지원해 온 각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교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유형과 지원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혼선을 빚게 되었다는 점이다.

법 시행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생한 혼선은 법 개정 내용 중 민간단체 보조금 등과 관련한 조항(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의 시행일자인 2015년부터 발생하였다. 법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예규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개정법 시행 이후의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관리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개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는 조항의 신설로 인하여, 개별 법률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근거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기존에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해 온 일부 민간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③ 지방재정법의 한계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이래, 지난 23년 간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시민의식이 증대하면서 지방 단위에서 자치단체, 의회, 시민사회 사이에서 시민의 자치의식을 함양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거버넌스가 발달해 왔다. 문제는 이들 거버넌스 운영이 지방의 자율성에 기초해 성장해 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지방재정법이 추

진됨으로써 자치와 자율의 풍토가 침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고령화 등 현대사회의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국가의 입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제공해야 할 요인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시민사회 활성화 전략이 지방자치 행정의 주요 테마의 하나로 부상하기도 하였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신설과 역할 강화도 이러한 흐름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단체의 운영비(인건비,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지원과 관련하여 혼선이 발생하였고,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도 상충되는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 교부절차의 법제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화로 인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의 자율성 간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 관건이 되었다. 즉,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시민사회의 현황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자율적 지원도 중요한 것이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입법의 의미

정부가 민간단체에게 재정지원을 할 때, 그것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규율하는 법이 바로 보조금관리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이다.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보조금관리법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② 시민단체 지원 관련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민간경상보조, 시민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방식의 경비이전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가 민간단체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지원이 가능하다(인천발전연구원, 2012: 23).

민간이전 경비 중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항목이 시민단체 보조금이다.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 및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규정에 설정되어 있는 기준경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 방침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된다. 그 지원범위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시민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강태구, 2007: 225).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① 입법과정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로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대표적인데, 이 법률은 1990년대에 시민단체들이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여러 차례 입법청원한 노력에 의해 1999년에 제정되었고, 2000년에 시행되었다. 1990년대 김영삼 정부 시절,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등과 같은 관변단체에 대한 배타적 재정지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집권당이었던 민주자유당(민자당)이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을 추진하였다. 이후 여당인 민자당과 야당인 평화민주당(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 각각 별도로 법안을 제출하여 입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양당의 입법 발의는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 속에 있는 공익적 결사체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보다는 시민사회의 반발에 대응하여 여론을 무마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하였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법률의 제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14대 국회 관련 소위원회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폐기되었다.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주축으로 하는 전국 시민단체 연대체인 <한국 시민단체협의회>가 1997년 8월,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률을 정비하고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조직 내부에 <민간단체 활동 관련 법률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동년 11월에 <시민사회발전기본법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및 시민사회발전기금의 설치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서 법률제정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또한 행정부와 입법부도 법률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98년에 들어와 집권당이 된 국민회의가 시민사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서 시민단체 지원과 관련된 법안을 준비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물론 국민회의에 의해 발의된 법안은 여야 간의 협상과 국회통과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초기 법안에 포함되었던 시민단체에 대한 각종 지원 내용이 크게 축소되었다. 예를 들어, 국·공유시설의 사용·수익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민간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등의 무상양여·대부는 극히 예외적인 규정으로서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이 밖에도 한국시민단체협의회가 요청했던 공익사업 수행 시 일정액(15%) 운영비 인정,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도 반영되지 않았다. 부칙 조항에 관변단체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지 조항을 삽입하기로 했으나, 이것 역시 최종적으로 관철되지 못하였다(박영선, 2011: 120-26). 이러한 내용들이 축소 또는 제외된 상태에서 여야가 타협한 법률안이 1999년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② 입법의 의미

1999년 12월에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2000년 1월 12일에 공포되어 법적 효력을 발휘하였다. 이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과거 <사회단체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듯이, 시민단체가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오히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면, 각종 시민사회단체(CSO)는 정부에 등록함으로써 일정한 공식성을 지닌 지위를 획득하고,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정부의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정부로부터 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받고 각종 공익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법률에 잘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제1조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률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집단의 활동이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의의와 필요성,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법 제3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의 자율성과 고유성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시민단체에 대한 이러한 정부의 의무와 지원은 정부에 등록된 단체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소규모의 단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특정 단체에 대한 규정이나 지원이 아니라, 일정한 범주에

속하는 단체 일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과거에 특별법을 통해 3개 관변단체에 배타적 지원을 하던 문제를 일정부분 극복하게 되었다. 즉, 기존의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등과 같은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의 폐지에 대한 압박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4H 활동지원법(안)이나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원 법률(안)처럼, 특정한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의 제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되었다.

③ 주요 지원 내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2000년 1월 12일에 공포되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학술적으로 시민단체의 개념과 유사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범위와 등록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는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먼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제2조에서 아래 6가지를 만족해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아울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면, 등록단체에 대해 아래 <표 3-40>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표 3-40>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시민단체 지원내용

지원 근거	지원 내용
행정지원 및 협력(제5조 및 영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대하여 행정지원 요청 가능 -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가능

보조금의 지원(제6조 및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소요경비 지원 - 매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중앙행정기관 등록단체) 또는 시 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 중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 공모방식으로 사업신청을 제출받아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 선정위원회의의 심사 선정을 거쳐,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조세감면(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가능
우편요금의 지원(제11조 및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 중 우편요금 별 후납 우편물에 대하여는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 - 다만, 「우편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정해진 감액률이 100분의 25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
공공기관협조(제13조 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④ 법률 개정 활동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하나의 법률로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 및 시민단체의 활성화에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애초에 시민사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입법과정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않아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일부 법률의 항목과 시행령이 개정되기도 했으나, 전면적인 개정을 하자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시민사회에서 각종 개정 내용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개정안을 국회와 정부에 청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의원의 공동발의로 여러 차례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그런가 하면, 행정부에서도 법안을 발의하였고, 행정자치부(혹은 행정안전부)는 시행령의 차원에서 일부 항목의 개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부 자구 수정과 같은 부분 개정을 제외하고는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발의된 개정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05년 유기준 의원의 개정안 제출 이후, 2014년까지 17차례에 걸쳐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었다(박영선, 2015). 물론 각 개정안은 어떤 정당에서 누가 발의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랐다. 심지어 시민단체에 대한 자율성과 지원을 강화하기보다는 단체활동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안

도 있었다. 예를 들어, 2002년에 창립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폐지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자고 주장하였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입법청원까지 이어져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로비활동을 전개하는 선까지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런가 하면, 2000년 중반 이후, 뉴라이트 운동진영으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었다(조용승, 2006; 신지호, 2008). 예를 들어, 각종 정부비판 단체 및 불법폭력 시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한 단체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침에 하달하여, 지원사업 선정을 심사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의 흐름을 2000년대와 2010년대로 나누어 정리하면, 각각 아래 <표 3-41> 및 <표 3-42>과 같다.¹⁸⁾

<표 3-4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활동1(2000년대)

제안일자	대표 제안자	의결결과	주요내용
2005.6.7	유기준	임기만료 폐기	-선사업시행 후 사업 평가에 의한 교부금의 사후 지원 -공익사업선정 및 평가위원회 개선 -정치적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사업의 유형과 지원대상을 한정하도록
2006.6.26	이상배	철회	-단체 구성원이 집시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그 형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법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또 해당 회계연도에 그가 받은 보조금 환수.
2006.7.21	전여옥	임기만료 폐기	-불법 폭력 시위로 형이 확정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이미 받은 보조금도 환수 -불법 폭력 시위로 형이 확정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는 사실을 숨기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2006.9.5	이상배	임기만료 폐기	-단체의 구성원이 집시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그로부터 3년간 이 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위 박탈,또 당해 행위가 발생한 해당 회계연도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환수.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4인,대법원장 또는 당해 지방법원장이 추천한 4인,국무총리 또는 당해 시·도지사가 추천한 4인 그리고

18) 박영선. (사)시민 정책위원회 회의자료(2015. 2. 25)

			<p>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 전문가 4인으로 구성하도록 함</p> <p>-경찰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이 집시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p>
2008.7.24	신지호	임기만료 폐기	<p>-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단체나 구성원이 집시법 등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등록 말소</p> <p>-구성원이 집시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록 신청 금지 및 교부받은 보조금 환수</p> <p>-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4인,대법원장 또는 당해 지방법원장이 추천한 4인,국무총리 또는 당해 시·도지사가 추천한 4인 그리고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 전문가 4인으로 구성</p>
2009.5.14	강기정	임기만료 폐기	<p>-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의 유형을 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그 구체적 유형을 신설하여 명확히 함</p>
2009.5.21	김유정	임기만료 폐기	<p>-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국회의장 또는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자가 3분의 2이상 포함하여 구성토록 하고,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p>
2009.6.3	정갑윤	임기만료 폐기	<p>-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와 사업보고서를, 비영리민간단체는 보조금 사용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각공개</p>
2009.7.29	정부	임기만료 폐기	<p>-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어문 규범의 준수,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p>

<표 3-4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활동2(2010년대)

제안일자	대표 제안자	의결결과	주요내용
2011.7.12	문학진	임기만료폐기	<p>-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p>
2011.8.22	정부	임기만료폐기	<p>-보조금 신청 기한을 3월 말에서 2월 말로 앞당김으로써 보조금이 조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함.</p>
2012.11.07	정부	원안가결	<p>-비영리민간단체 등록관청에 처(處)나 청(廳)단위의 중앙행정기관도 포함하고,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p>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의 사업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공익사업 선정기준 공고일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조정.
2013.01.30	임수경	법안심사소위 검토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
2013.12.06	문희상	상임위 검토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부여하여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의 벌칙규정을 마련
2013.12.10	이낙연	원안가결	-법정형 정비에 따른 편차 조정(보조금 부정 집행 법정형 상향 조정)
2014.11.07	김우남	소위원회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
2014.12.15	김민기	소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보고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2015년 이후에도 이 법률의 전면적 개정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시민사회발전기본법(안)을 들 수 있다.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은 시민단체에서 제의한 것도 있고, 정부에서 제의한 것도 있다. 시민사회에서 제의한 것에는 시민단체의 활동가를 위한 공제회의 설치, 통신료의 인하, 공영방송 홍보와 같은, 다방면에 걸친 적극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다른 결사체와의 형평성 문제나 실제로 법률의 국회통과 가능성의 부족으로 인해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와 시민단체 간에 논의를 진행하면서 일부 항목을 삭제하되,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재단의 설치를 위한 지원 등과 같은 내용은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기도 하다. 현재로써는 이러한 기본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입법로비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이후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활동을 살펴보면 아래와 <표 3-43>과 같다.

<표 3-4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활동3(2015년 이후)

제안일자	대표 제안자	의결결과	주요내용
2015.4.29	위원장	원안가결	-사업평가실시와, 홈페이지등을 통한 사업실적, 성과, 지출내역 공개 규정 등. ○ 공익사업선정위원의 벌칙규정 적용시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을

			<p>돕.</p> <p>-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원하기위한 규정뿐만 아니라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 대한 등록 요건 규정.</p> <p>-등록의 말소에 따른 규정을 돕.</p>
2015.11.10	노웅래	수정가결	
2016.7.26	문희상	소위원회	<p>-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부여하여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의 벌칙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가 그 활동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13조제3항 신설)</p>
2016.8.29	백재현	소위원회	<p>-비영리민간단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제9조제2항).</p>
2016.8.30	권미혁	소위원회	<p>-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요건 중 상시 구성원수를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조제4호).</p> <p>-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청취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행정자치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각각 신설).</p> <p>-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위원회를 둠(안 제3조의4 신설).</p> <p>-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사업비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편요금 외에 통신요금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경영지원, 시설비·임대료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p> <p>-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별로 비영리민간단체 통합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4 신설).</p>
2017.1.2	박남춘	소위원회	<p>-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공익사업 지원 대상이 완료된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선정과 이에 따른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안 제7조).</p>
2017.1.25	강창일	소위원회	<p>-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에 평화적 통일 정책에 위배되거나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저해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을 추가함(안 제2조).</p> <p>-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실상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거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3회 이상 환수당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고, 비영리민간단체</p>

		<p>가 평화적 통일 정책에 위배되거나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저해하는 활동을 한 때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p> <p>-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원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지원받은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등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비영리민간단체는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p> <p>-공익사업의 선정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둠(안 제6조의3 신설).</p> <p>-최근 1년간 비영리민간단체의 평가결과가 공익사업 지원 대상의 선정 목적에서 벗어나는 등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p> <p>-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행정자치부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p> <p>-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등록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4조 신설).</p>
--	--	---------------------------------------------------------------------------------------------------------------------------------------------------------------------------------------------------------------------------------------------------------------------------------------------------------------------------------------------------------------------------------------------------------------------------------------------------------------------------------------------------------------------------------------------------------------------------------------------------------------------------------------

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한계와 문제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가진 의의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은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증대한다는 기본법의 성격보다는 소극적으로 현존하는 단체의 요구에 대응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시민사회의 발전에 대한 장기적 전략,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지역재단의 설립, 중간지원기관의 설치를 위한 노력 등과 같은 규정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성격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일정한 수준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발전이나 시민단체 활동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다. 물론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의 목적과 절차를 비교적 일관성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과 선정, 평가와 차기 선정 시 평가에의 반영 등 절차에서 공개적이며 공정한 절차와 기준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동춘 · 조효제 · 이대훈, 2004: 48). 그럼에도 현재 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재정지원이 실제로 시민사회의 발전을 추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시민사회에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그야말로 다양한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고, 정부의 다양한 부처에서 정부와 시민단체 간에 민관 거버넌스도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사회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비전이 부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셋째, 매년 진행되고 있는 재정지원사업의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를 예로 들 수 있다(좌세준, 2011). 행정안전부 주도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권의 성격이나 정책목표에 따라 지원방향과 영역이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시민사회의 활동을 강화하거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지원영역을 정부의 부처가 결정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와 관련된 사업에 재정을 지원하거나 박근혜 정부에서 화이트리스트(white list)에 선별적으로 특혜를 준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재정을 지원하고 감독하되, 자원의 배분과 활동은 시민사회에서 일정한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넷째, 앞서 지적한 문제 외에도 인건비 지원의 불가, 단년도 지원방식,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구성, 신규 및 소규모 단체의 지원 불가, 사업영역의 협소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전향적으로 민주시민의 양성과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사회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질적 발전을 강화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증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인건비 사용의 불허로 인해 실제로 단체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선에서 허용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서울시의 관련 조례

서울시의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정책은 기본적으로 2000년에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고 있다. 서울시는 모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근간으로 2006년 <서울특별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동 조례의 1조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서울시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공익에 이바지하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는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영리 및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또한 해당 보조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비의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특정 단체에 예외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는 보다 발전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으로 2015년 5월 14일 폐지되었다.

또한 해당 보조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비의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특정 단체에 예외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표준 준칙안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보조사업의 수행사항 점검, 교부결정의 취소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보조사업 공개 등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조례3)가 개정됨에 따라 2015년 5월 14일 폐지되었다.

① 입법과정

이후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2010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1)를 제정하였다. 조례1의 제정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제2항에 시·도지사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사업 및 금액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 있어서,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

한편 2013년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동 조례 제1조),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조례2)를 제정하였다.

② 입법의 의미

조례1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자격,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제5항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6조 및 제

7조에 따르고 있다. 2010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인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르고, 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장의 직무 대행,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두고 있다. 서울시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 수준에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례2는 제3조에 “시민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을 행하는 시민, NPO는 각 주체의 다양성과 자발성 및 창조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공익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해두고 있다. 즉, 동 조례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서울시)와 개인(서울시민) 사이에 중간지원기관으로서 시민단체(NGO)를 두고 각 주체가 상호 협력을 통해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조례2가 제정됨으로써 서울시에 소재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열악한 단체가 추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동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시는 조직 내부에 시민공익활동 촉진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시민공익활동 촉진과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고, NPO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조례2는 서울시의 개인 및 단체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장의 의무도 규정해두고 있다. 즉, 동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제5조)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제6조-제8조), NPO지원센터의 기능과 감독에 대한 자세한 내용(제9조-제15조)도 정해두고 있다.

③ 주요 지원 내용

조례1은 시민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공익사업 선정과 관련된 투명성, 공정성, 절차의 정당성을 담보해 시민단체의 공익사업 참여와 활동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시민단체는 신뢰라는 사회자본을 확장시키는 핵심동력일 뿐만 아니라, 시장실패 (market failure) 혹은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현실은 상근자 5명 미만의 소규모 단체가 대부분이고, 절반 정도는 예산규모가 1억 미만으로 상근자 인건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 조례2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서울시정부에게 시민의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서울시 NPO지원센터 등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2는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시장은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제5조).
- 시민공익활동 촉진과 시민사회발전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 촉진위원회를 둔다. 시민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주요기능은 센터의 사업계획수립·시행, 시민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장소 제공, 시민사회단체 교육훈련 및 인재육성, 시민사회단체 컨설팅,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시민사회단체 정보자료 집적·제공 등을 수행한다(제6조-제8조).
- NPO지원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제11조).
- 기타, 운영비 지원 및 정산, 사용료 등, 운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예약취소 등 NPO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포함한다(제12조-제17조).

④ 조례의 한계

조례1과 조례2는 한국에서 지방자치 수준에서는 선도적으로 시민단체, 혹은 더 넓게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써 NPO센터를 비롯하여 중간지원기관의 예산확보와 자체 기획에 의해 각종 시민단체 간의 네트워크, 소통, 공동협력 등을 위한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영역

의 시민운동이나 신규단체에 대한 대응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시민사회를 넘어 정부와 시장 영역과의 협력, 국제적 차원에서 지방 간 협력 등, 다양한 기획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행정적 융통성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조례3은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의 절차를 제시하고 있지만, 시민단체 지원의 현실적 필요성이 제기되는 운영비(인건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에는 하위 법령으로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상위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전면 개정 이후에야 순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IV. 지원사업의 제도개선 방안

1. 행정 절차 및 관리과정의 개선

가. 개요

서울시의 시민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하여 다른 기관에 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증대하려고 노력하는 측면이 엿보인다. 실제로 재정지원사업의 관리과정에 대한 만족도에서 만족 약 45%에 비해 불만을 표시한 사람은 약 11%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리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존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확대, 재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시민단체들이 불만을 느끼는 사항도 있다. 여기서는 관리과정에 대한 분석 및 서베이, 인터뷰, 상근자 토론 등에 근거하여 행정관리의 과정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나. 신청단체의 현황 파악

서울시 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한 단체는 대체로 단독형이지만, 협의형/연대체의 조직형태를 가진 단체도 전체의 약 18%를 차지하였다. 협의형/연대체는 대체로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들이 모인 협의체이다. 지원단체 중 협의체가 이렇게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기존의 경쟁방식 외에 별도로 영역별 협의체들과 전략적인 사업에서 단독계약 형식의 협력사업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지원한 단체의 활동범위에서 서울시(광역시, 자치구, 마을)가 31%를 차지하고, 세계와 전국 규모가 69%를 차지하였다.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전국 규모로 활동하는 단체나 세계 규모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비중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에서 광역자치단체로서 서울시의 정체성과 상응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로서 서울시가 실시하는 재정지원사업의 정책방향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세계나 전국 규모가 서울시의 규모보다 많다면, 중앙정부의 행정안전부를 비롯하여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재정지원사업과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체의 활동영역(대분류)에서 대안사회운동의 영역이 약 45%로써 많이 차지한다는 점에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물론 앞서 지적한 것처럼, 대안사회운동이라는 것이 개념적으로 애매하고 다양한 측면이 있지만, 설문에 참여한 단체들이 스스로 대안사회운동을 위해 주로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재정지

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근대문명과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에 대한 보완과 극복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증대하는 문제를 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재정지원사업의 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더구나 대안사회 운동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수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명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운동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시민사회의 역량을 증대하고 각종 시민운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고, 방향을 설정하며,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그럼에도 서울시의 재정지원사업이 한국의 모범으로서, 또 세계에서 선구적인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질적인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 지원사업의 신청

서울시 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이유 중에서 지원제도를 모른다(17.8%)와 스스로 신청조건이 되지 않거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역량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단체(34.6%)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서는 일단 신청한 경험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했지만,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그 해에는 지원제도나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획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의견제시에서도 나왔지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수단의 다양화 및 홍보와 신청 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신청준비나 단체역량이 부족하여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신청 기간의 확대뿐만 아니라,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간소화, 모범적인 신청서의 공유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지원사업의 영역의 협소함에 대한 불만도 있었는데, 사업영역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영역을 세분화하여 확대하든가, 자유분야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단체들이 자유분야는 사업지원 선정을 적게 하는 줄 알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2016년에 실시되었다가, 2017년에 폐지된 민관협력사업은 오히려 전략적인 지원방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민관협력사업은 대체로 일정한 능력을 가진 대형단체들이 지정되어 사업을 실행하게 되는데,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신규단체나 소형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민관협력사업을 앞서 말한 협의형/연대체와 전략적으로 추진하면서 각 분야의 신규단체나 소형단체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지원사업의 기간에 대해서도 중복 응답의 경우 전체 12% 정도가 단년도 지원사업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의견제시에서도 단년도 중심의 지원사업을 다년도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사업의 영역이나 성격에

따라 단년도 사업 외에 중장기적으로 2-4년 기간의 다년도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라. 사업선정의 방식 및 기준

사업선정은 신청하는 단체로서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공정하게 심사하여 사업지원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는 현재 3단계를 걸쳐 단계적으로 사업선정과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경우, 15명의 공익사업선정 위원 중에서 회계사와 변호사의 참여, 시민단체 중에서도 소형 시민단체의 간부가 참여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또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공무원과 준공공기관장 출신이 4명으로써 과도하게 많고, 민간기관장 4명까지 합치면 8명이 된다. 그런가 하면 참여하는 교수도 시민사회 전문가가 아니었다.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은 왜 시민단체에 재정을 지원해야 하고, 재정지원사업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며, 사업의 선정과 평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장기적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거버넌스의 확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생성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각종 결사체, 그 중에서도 공공성과 역동성이 강한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관점은 국가와 시장의 이념이나 원리와는 다른 이념 및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시민사회는 가치지향적인 문화적 영역이기 때문에 심사나 평가에서 사업의 질적 가치를 고려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다. 의견제시에서도 심사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사업을 신청하여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단체가 42개 단체이다. 심지어 5회 모두 신청하여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단체가 3개 단체, 1회 선정된 단체가 6개 단체이다. 본 연구에서 추진한 서베이로써는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간단한 인터뷰에서는 단체역량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소형단체나 역량이 부족한 단체에 대한 추가 선정, 필요한 자료의 제공, 컨설팅의 확대 등과 같은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업이 참신하고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강하지만, 단체의 규모가 작고 신청서류를 작성할 전문가가 없다면, 이러한 단체를 어떻게 지원하고 심사에서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재정지원사업에서 신청한 횟수와 선정된 횟수는 일정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처음 신청하는 단체는 그만큼 선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아 새롭게 등록하여 처음으로 신청한 단체에게 맞춤형 행정의 형식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류작성과 관련하여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 행정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3년 이후 지원단체로 선정된 횡수가 늘어날수록 지원금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지원받은 횡수가 많다는 것은 서류를 잘 작성하고 일정한 역량을 가진 대형단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대형단체일수록 중복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중복으로 선정되어 지원받는 지원금도 늘어났다. 이러한 경향은 신규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적으로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적과는 배치된다. 따라서 대규모 단체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 사업의 평가

중간평가가 현장실사의 방식을 적용하여 사무실을 방문하고 일정하게 사업진행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그런데 최종평가를 서류평가만으로 하는 것은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일단 서류를 가지고 사업실적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서류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 서류에 나타나 있지만 의문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면평가를 통해 직접 질문함으로써 파악하는 것이 평가의 객관성과 적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대면평가를 집단면접 형식으로 진행할 경우, 단체간에 상호 비교가 되어 평가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평가에 참여한 단체도 다른 단체의 사업내용을 듣게 됨으로써 상호 학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최종평가를 집단면접의 대면평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정부의 몇몇 부처에서는 전국적으로 편재된 단체에게도 최종평가에서 집단면접의 방식을 사용한다. 그런데 서울시의 재정지원사업은 서울 소재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집단면접에 참여하는 것이 커다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 외에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최종평가에서 양호와 탁월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이가 실제로 단체가 사업을 잘 하기 때문인지, 혹은 단체의 역량이 그만큼 증가하였기 때문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평가자나 평가방식에서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3-14년에는 대체로 지원금이 높을수록 양호/탁월이 많았다. 그런데 2015-16년에는 지원금이 높을수록 양호/탁월 평가를 받은 단체수가 오히려 적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내부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

바. 기타 행정편이를 위한 개선

서울시의 재정지원사업에서 준비 및 결과 보고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가능하면 간소화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시민단체에 대한 갑작스런 요구나 시민단체가 행정부처에 어떤 질문이 있을 때 느끼는 불편은 행정의 공식화 및 소통의 확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의견제시에서 나온 것처럼, 일부 소수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편향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질문이나 요청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2. 지원사업의 적절성 및 효과성 증진 방안

가. 재정지원의 효과성 증진

설문에 응한 단체의 67%가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단체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이것은 단순 사업진행(26%)이라고 보는 의견보다 훨씬 높았다. 서베이를 통해 파악한 재정지원의 이러한 효과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시민사회 내, 시민사회와 서울시 간에 상호 협력, 신뢰구축 등 사회자본의 생성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나. 지원금의 수준 및 사용

지원금액의 수준에 대해 큰 문제는 없지만, 불만족의 수준(31%)이 만족 수준(19%)보다 높고, 의견제시에서도 일부 단체가 지원금이 적어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지원단체의 수를 줄이고 지원금액을 증대하는 것은 앞서 선정 과정에서 높은 경쟁률이 문제라고 본 의견이 전체의 약 1/3이라는 점에서, 지원단체 수와 지원금액 수준 사이에 정책적 거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로써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서울시의 지원 예산을 늘리는 것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원금액의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인건비의 사용 허용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 이러한 요청은 서베이뿐만 아니라 상근자 집단토론에서도 많은 상근자들이 제기한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것은 서울시 지원사업 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거의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최근 행정안전부의 시민단체 지원사업에서는 금액의 일부를

인건비로 사용하는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지원금의 일정한 비율을 인건비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다. 컨설팅의 효과성 제고

서울시에서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각종 컨설팅의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었다. 다만 일부에서 19% 정도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의견제시에서도 단체의 특성에 맞는 컨설팅 및 컨설팅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컨설팅의 프로그램을 지속하면서 전문성의 증대, 영역별 특수성의 고려 등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라. 시민단체와 정부 간의 신뢰구축 강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울시의 재정지원사업이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약 80%가 양자 간의 상호 협력 및 신뢰 구축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예산을 증대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경쟁지원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파트너십이나 거버넌스를 통해 각종 공공서비스를 공동 생산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관련 법령의 개선

가.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의 제정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 중 ‘기본법’이라는 법률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주요 법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검진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관광기본법, 교육기본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2015년 5월 18일 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문화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자격기본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청소년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2012년 1월 26일 제정), 환경정책기본법,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제19대 국회에 입법안이 발의되었던 기본법이 있다. 아동기본법, 이주아동 권리기본법(이자스민 의원 발의), 주거기본법, 군인권기본법, 기후변화건강관리기본법,

교통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유승민 발의안, 신계륜 발의, 박원석 발의안) 등이 있다. 기본법의 탄생(제정)은 입법을 전후하여 특별한 시대적 상황에 처하거나 사회적으로 주요한 사건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입법운동의 차원에서 보면 기본법 형태의 법안을 제안하고 관철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내재되어 있다. 이를 시민단체의 지원과 관련된 법률에 한정해 살펴보기로 한다.

현 시점에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논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의 발전을 통해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고,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익성이 강한 시민단체(NGO), 혹은 좀 더 넓게 시민사회단체(CSO)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기본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도 매우 제한적이다. 물론 기본법의 명칭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없다면 커다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사실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여러 가지 문제를 지니고 있다. 비영리단체지원법은 총13개 조문과 부칙 규정을 두고 있고, 비영리단체의 등록(제4조), 비영리단체에 대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제5조), 공익사업에 대한 소요경비 지원(제6조), 비영리단체에 대한 조세감면(제10조), 우편요금 지원(제1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민사회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의 지위와 활동가들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데, 기본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정부(행정안전부) 주도로 공익사업을 지원, 평가, 감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시민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사회를 발전시키고, 이에 기초하여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을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물론 저임금을 비롯하여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상근자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

시민사회에서 주장하는 시민사회발전에 관한 기본법은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및 민간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정부의 의지를 명문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계획의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기구 및 전달체계 등의 조항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 지원을 통한 민간공익활동 확대와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물론 시민사회와 정부 간 파트너십의 원칙과 각각의 역할을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영국의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협약, 일본의 요코하마 코드, 샌다이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등이 유용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때,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정부 내에 기구를 설치하고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 시민사회발전위원회, 혹은 제3섹터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일종의 자문기구 정

도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매년 예산 수립 및 배정 형태로 시민단체에게 지원을 할 뿐, 실제로 시민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독립된 재단 형식의 기금설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금이 설치된다면,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은 시민단체의 활동에 한정되지 않고, 민주시민교육, 자원봉사활동, 국제교류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즉,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과 지원이 가능하고, NGO의 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을 결합하며, 한국 시민사회가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평화의 발전을 위한 허브(hub)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박상필·배성환, 2017).

시민사회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에서 법률안을 만들어 청원한 적이 있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행정안전부 내부에서도 논의하였다. 또한 정부(행정안전부)와 시민사회가 공동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통분모를 찾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조만간 행정안전부에서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논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증대를 위해 시민사회 발전의 필요성을 체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현행 서울시 조례의 개정

서울시의 시민단체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증대하고 시민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를 전향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현행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조례2)의 일부 항목을 개정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제3장 서울시 NPO지원센터에 관하여 다음의 항목들을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 기능 가운데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을 위한 상설기구와 인력설치를 명문화하고, 시민공익활동가 활동지원, NPO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제 구축 기능 외에 기업과의 협력체제 구축 및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기부금모집 지원,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전문가집단 자료 확보 및 제공, 정보의 수집·편집·제공·발신, 그리고 지역자원의 발굴·개발·중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의 유료화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자료 및 정보이용료, 자료집 판매, 각종 시설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들을 추가할 수도 있다. 또한 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 및 수행사업에 대한 결과 공개 및 관련 정보 공개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 서울시 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

사회구조가 복잡다단하고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민사회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시민들의 자원적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사회 내에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를 활용하지 않고 정부의 관료조직으로 다양한 사회문제와 개인의 수준 높은 욕구에 대응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렵다.

시민사회의 잠재력을 파악하여 이를 활용하는 데는 반드시 중앙정부가 선도적으로 나아가갈 필요는 없다. 한국의 수도로서, 또한 세계적 규모의 도시로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각종 제도를 정비하여 시민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로 만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의 활동지원 기금에 관한 조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시 시민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기금을 설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금 조성,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도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이다. 가장 중요한 기금의 출처는 서울시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금의 취지에 따른 기부금, 그 밖의 수익금 등이 될 수 있다. 처음에는 서울시의 출연금과 기업 기부금 등을 포함하여 서울시 총 예산의 0.05%인 100억 원 규모로 시작할 수 있다. 물론 조례의 내용에 우수한 단체를 선정하여 시민들이 기부금을 내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와 시민사회 간에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칭 <서울특별시 민관협력 추진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시민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서울시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이 서울시의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참여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통해 서울시의 민관협력체제 구축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서울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상위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존하지 않고 선도적으로 추진해가는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시민단체에 대한 서울시 재정지원사업의 관리과정, 서베이 조사 및 집단토론,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관리절차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의 확대, 심사방식의 개선,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구성의 개선, 소규모 단체의 진입 불리에 대한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서베이 분석에서는 홍보 및 신청 기간의 확대, 사업영역의 다양화, 다년도 지원사업의 병행, 서울시 규모의 단체에 대한 지원의 확대, 신규 및 소규모 단체에 대한 배려, 행정의 간소화 등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관련 법령 분석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의 제정, 서울시 각종 조례의 개정 및 제정에서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확대, 시민의 공익활동 참여 및 시민단체 지원기금 설치와 관련된 새로운 조례의 제정 등을 제안하였다.

한국 시민사회는 이제 개발도상국의 발전모델이거나 선진국 중의 하나라는 위상을 넘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많은 시민사회 학자 및 활동가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서울시는 한국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도시로서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 및 세계에서 시민사회 발전에 관한 하나의 모델을 구축해 갈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시민사회의 토대를 강화하고 각종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재정지원 사업을 개선하고 그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포괄적 제안을 마지막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거의 20년 동안 시민사회 전공자가 제안한 별도의 독립재단 설립을 통한 재정지원 방안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서울시에서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여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전담할 경우, 시민단체와의 상시적 소통, 신규단체에 대한 고려, 특수한 단체에 대한 배려, 심사와 컨설팅에서 전문가의 동원, 행정 불편의 개선, 국제적인 교류와 지원 등 현존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독립재단의 설립은 모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이러한 규정을 포함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역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독립재단의 설립은 기업기부금과 개인기부금을 유도하는 데도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물론 독립재단은 정부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가지고, 시민사회의 영역이나 이데올로기 대립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시민사회의 화합을 지향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앞서 실시한 분석에 의하면, 서울시의 재정지원사업이 장기적으로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고, 서울시와 시민단체 간의 신

외구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서 예산증액의 근거도 충분하다고 본다.

둘째, 재정지원에서 인건비의 사용 불허 문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것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에서도 제기되었고, 중앙정부의 각종 부처의 지원사업에서도 제기되었다. 물론 공공재정을 시민단체가 사용하면서 상근자의 인건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합법성이나 사회적 형평성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공익성이 강한 시민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담당 상근자의 인건비를 일부 사용하는 것은 그 나름의 논리가 있다고 본다. 물론 그 비율을 일정하게 제한하고, 엄격한 회계 정산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서베이 조사 결과, 많은 단체들이 스스로 대안사회운동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서울시의 시민단체 재정지원 사업이 장기적 단체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으며, 나아가 서울시와 시민단체 간에 신뢰구축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또한 예상외로 협의형/연대체의 단체가 많았다. 전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시민사회의 토대를 구축하는 전략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후자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의 재정지원 방식과 병행하여 시민사회의 각 영역의 협의체와 전략적 협력방식을 추진함으로써 특정 영역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고, 각 영역의 신규 및 소규모 단체의 참여도 유도할 수 있다.

넷째, 서울시가 자체에서 5년 단위로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서울시의 시민단체 재정지원 사업이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각종 프로그램이 유효하게 작동하는지, 시민단체들은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지원 사업을 전담할 독립재단의 설립, 인건비의 일부 허용, 사회자본의 형성 및 시민사회의 토대 구축, 중장기적 내부 평가 등은 서울시가 단지 중앙정부의 정책을 추종하고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수도이자 세계적인 대규모 도시로서 서울시가 프런티어의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모델과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고대했던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변화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단행본

- 김성국,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 유팔무 · 김정훈(공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2」, 한울, 2001.
- 김세균, “시민사회론의 이데올로기적 함의 비판.” 유팔무 · 김호기(공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1995.
- 박상필, 「NGO와 현대사회」, 아르케, 2001.
- _____, 「NGO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개정판), 한울, 2007.
- _____,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개정판), 한울, 2008.
- _____, 「NGO학: 자율 참여 연대의 동학」(개정판), 아르케, 2011.
- _____, 「한국 시민운동역량 측정」, 조명출판사, 2014.
- 박상필·배성환, 「NGO의 자율성확보를 위한 지원체제 확립방안」,
박충훈·김연수, 「한국 시민사회 그랜드 디자인」, 조명출판사, 2017.
- 손호철, “국가-시민사회론: 한국정치에의 새 대안인가?” 유팔무 · 김정훈(공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2」, 한울, 2001.
- 임승빈, 「정부와 NGO」, 대영문화사, 2009.
- 임영일, “한국의 산업화와 계급정치.” 한국사회학회 · 한국정치학회(공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1992.
- 장계련 외,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지방발전연구원, 2015.
- 차병직, 「NGO와 법」, 이화여대출판부, 2002.
- 최장집, 「한국현대정치의 구조와 변화」, 까치, 1989.
- Bauer, Rudolph(1998), “Intermediarity: A Theoretical Paradigm for Third Sector Research.” Paper Presented to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ird Sector Research. Geneva; Requoted in JonVan

- Til, *Growing Civil Societ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0.
- Cohen, Jean and Arato, Andrew(1992).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The MIT Press.
- Dilulio, Jr., John(1998). "The Lord's Work: The Church and Civil Society." E. J. Dionne, Jr.(ed.), *Community Works: The Revival of Civil Society in America*, 50-58.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Ferris, James & Elizabeth Graddy(1989). "Fading Distinctions among the Nonprofit, Government, and For-profit Sectors." In Virginia A. Hodgkinson and Richard W. Lyman(eds.). *The Future of the Nonprofit Sector*. 123-139.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Gidron, Benjamin, et al.(eds.)(1992). *Government and the Third Sector: Emerging Relationships in Welfare State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Held, David(1989). 『민주주의의 모델』, 이정식(역). 서울: 인간사랑; *Models of De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 1987.
- Kaul, I.(2006). "Exploring the Policy Space between Markets and States: Global Public-Private Partnerships." *The New Public Finance: Reporting to Global Challenge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Keane, John(1988). *Democracy and Civil Society*. London: Verso.
- Kramer, Ralph(1981). *Voluntary Agencies in the Welfare Stat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e Grand, J., et al.(1999). *The Economics of Social Problems*(3rd edition), Macmillan.
- Piciotto, R(1995). *Putting Institutional Economics at Work*. (World Bank Discussion Paper, No. 304). Washington, D.C: World Bank.
- O'Neill, Michael(1989). *The Third America*.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Salamon, Lester and Helmut Anheier(ed.)(1997). *Defining the Nonprofit Sector: A Cross-National Analysi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Schambra, William(1998). "All Community Is Local: The Key to America's Civic Renewal." E. J. Dionne, Jr.(ed.), *Community Works: The Revival of Civil Society in America*, 44-49.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Skocpol, Theda(1998). “Don’t Blame Big Government: America’s Voluntary Groups Thrive in a National Network.” E. J. Dionne, Jr.(ed.), *Community Works: The Revival of Civil Society in America*.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Sumariwalla, Russy(1983). “Preliminary Observations on Scope, Size, and Classification of the Sector.” *Working Papers for the Spring Research Forum: Since the Filer Commission(pp. 181-228)*. Washington, D.C.: Independent Sector.; Quoted in Jon Van Til, *Mapping the Third Sector*. New York: The Foundation Center, 1988.
- Van Til, Jon(2000). *Growing Civil Societ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Weisbrod, Burton(1988). *The Nonprofit Econom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uthnow, Robert(1991). “The Voluntary Sector: Legacy of the Past, Hope for the Future?” Robert Wuthnow(ed.), *Between States and Marke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연구논문 및 학위논문

- 강상욱, “우리나라 NGO의 성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강태구(2007),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7권 2호, 2007.
- 김동춘 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성공회대학교, 2004.
- 김시형·남창우, “지방정부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한 공무원과 사회단체의 인식 비교분석: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제27권 4호, 2014.
- 남동희, “NGO성과평가와 기부문화의 연계를 위한 시론적 제안: 환경관련 NGO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8(4), 2006.
- 박상필, “NGO 지도자의 사회적 배경과 인식,” 『한국행정연구』 9(2): 118-52, 2000.
- _____,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유형 비교,” 「행정논총」 39(4), 2001.

- 박영도, “입법학과 입법정책,” 「법과 정책연구」 제5권 1호, 2005.
- 박영선, “한국 시민사회 관련법의 변화에 대한 연구.” 성공회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 _____,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 방향.” <정부의 민간 공익활동 지원 사업 개선방안 모색> 자료집, 2014.
- _____, “정부의 민간공익활동 지원제도 연구: 시민사회 조직 지원법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13권 2호, 2015.
- 박치성·한승준,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지원에 대한 연구> 자료집, 2009.
- 박천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 개선방안 : 공익활동 지원 사업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 박혜라, “정부지원과 NGO의 자율성 연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 사회단체보조금개선전국네트워크·홍미영 의원실, <사회단체보조금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3-206 사회단체보조금 보고서>, 2006.
- 오관영·최승우,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의 새로운 방향을 위한 연구 보고서>. 서울시 NPO지원센터, 2015.
- 원유미, “시민단체의 재정자립화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시원·김주찬, “정책결정과정에서 야당의 영향력 연구,” 205년도 한국행정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5.
- 인천발전연구원,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운영개선 방안>, 2012.
- 임승빈, “실증적 분석을 통한 한국의 시민단체 활동의 변화에 관한 연구: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들의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1(2), 2002.
- 정광호, “외부의 재정지원이 조직운영에 미치는 영향: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민간기부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8(4): 85-105, 2004.
- 정윤수, “국가-시민사회관 계의 활성화 방향-법적,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경찰대학 논문집」 제14호, 1994.
- 좌세준, “이명박 정부 시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정책의 변화.” 「시민과 세계」 제19호, 2011.
- 주성수·박영선·김이경, <서울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14.
- 주성수 외, “2000 서울시정참여사업 평가보고서,”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1.

하승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제도 개선방안.” <민간공익법토론회> 자료집, 2005.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활성화방안 연구>, 서울시의회 연구보고서, 2015.

Lipsky, Michael and Steven Smith(1989). "Nonprofit Organizations, Government, and the Welfare Stat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04(4).

Tanzi, Neil and Rebecca Ballhaus(2013). "Approval of Obama, Congress Falls in New Poll." *Wall Street Journal*(July 24).

■ 서울시 자료

서울시, 2013-2017 공익활동 지원사업 접수현황, 2017a.

_____, 2013-2017 공익활동 지원사업 지원현황(평가결과), 2017b.

_____, 2017 공익활동 지원사업 개요, 2017c.

<부록1>: 단체조사 설문지

<서울시 NGO의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설문>

안녕하십니까?

한국NGO학회에서는 서울시 의회의 지원을 받아 서울시 NGO의 공익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의 현황과 효과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서울시의 시민단체 재정지원 사업에서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향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본 사이트에서 이뤄진 응답 내용에 대해서는 익명과 비밀이 보장됩니다. 적극적인 응답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설문에 대한 문의사항은 huh9595@naver.com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2017. 10.

(사) 한국NGO학회

연구책임자: 박상필(성공회대)

공동연구원: 허태욱(KAIST), 윤창원(서울디지털대)

서울시 재정지원사업이란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지원사업" "참여예산제지원사업" "서울시 예산지원사업" 등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일체의 재정사업을 통칭한 것을 말함

【서울시 재정지원 신청】

1. 귀 기관은 2013년 이후 5년간 서울시 재정지원사업에 몇 차례 신청하였습니까?
① 모두 신청(5회) ② 4회 ③ 3회 ④ 2회 ⑤ 1회 ⑥ 신청한 적 없음

2. 귀 기관은 2013년 이후 5년간 서울시 재정지원사업에 몇 차례 선정되었습니까?
① 모두 선정(5회) ② 4회 ③ 3회 ④ 2회 ⑤ 1회 ⑥ 선정된 적 없음

3. 지난 5년간 서울시 재정지원에 신청하지 않은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재정지원 제도를 몰라서 ② 신청조건이 안되어서 ③ 신청 준비나 역량이 부족해서
④ 정부 지원금이 적어서 ⑤ 기타(작성: _____)

4. 지난 5년간 서울시 재정지원에 탈락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단체역량 미흡 ② 높은 경쟁률 ③ 심사의 불공정
④ 기타(작성: _____)

5. 재정지원 신청 및 선정과정에서 느끼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2개 이내 중복선택 가능)
① 심사 불공정 ② 높은 경쟁률 ③ 지원금 부족 ④ 인건비 지급 불가
⑤ 까다로운 절차 및 서류작성 ⑥ 단일년도 지원 ⑦ 홍보부족, 불친절
⑧ 기타(작성: _____)

6. 재정지원사업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공정 ② 대체로 공정 ③ 보통 ④ 공정하지 못함 ⑤ 매우 공정하지 못함

7. 재정지원 금액의 수준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8. 서울시의 재정지원사업 관리과정 중 사업설명회,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중간 및 최종 평가 등의 효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보통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9. 서울시의 재정지원사업 관리과정 중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진행에 대한 **컨설팅의 효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보통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10. 서울시의 지원금이 단체 성장의 **어떤 부문에서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단순 사업진행 ② 다른 단체와의 연대강화 ③ 장기적 단체역량강화 ④ 효과가 없다

11. 재정지원사업이 **정부(서울시)와 시민단체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호 협력 및 신뢰에 기여한다 ② 정부 견제능력을 위축시킨다 ③ 별다른 영향이 없다

12. 서울시 재정지원 제도와 관련한 **불만사항 및 제도개선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작성:

【단체 개요/특성 사항】 (보기 선택 & 직접 작성)

A. 단체 위치(구 단위): (구) B. 단체 설립년도: (년)

C. 연간 예산(원): ① 5천만 미만 ② 5천만-1억 미만 ③ 1억-5억 미만 ④ 5억-10억
미만 ⑤ 10억-50억 미만 ⑥ 50억-100억 미만 ⑦ 100억 이상

D. 회원수(명):

E. 상근자수(파트타임은 풀타임으로 계산(주 20시간 파트타임 2명은 1명으로 계산):

F. 자원봉사자수(파트타임은 풀타임으로 계산(주 20시간 파트타임 2명은 1명으로 계산):

G. 법인형태: ① 임의단체 ② 사단법인 ③ 재단법인 ④ 기타법인

H. 조직형태: ① 협의형/연대체 ② 연합형 ③ 단독형

I. 활동범위: ① 세계 ② 전국 ③ 서울시 ④ 자치구 ⑤ 마을

J-1. 활동영역(대분류): ① 주창활동 ② 서비스생산 ③ 대안사회운동

J-2. 활동영역(중분류) (2개 이내 중복선택 가능)

- ① 환경 ② 인권 ③ 평화/통일 ④ 여성 ⑤ 정치/경제 ⑥ 교육/연구
- ⑦ 의료/보건 ⑧ 문화/체육 ⑨ 복지 ⑩ 청년/아동 ⑪ 소비자권리 ⑫ 도시/가정
- ⑬ 노동/빈민 ⑭ 외국인 ⑮ 모금/추모 ⑯ 자원봉사 ⑰ 국제협력 ⑱ 대안사회
- ⑲ 온라인활동 ⑳ 기타

K. 단체 설립목적: (작성: _____)

L. 2017년 주요사업: (작성: _____)

〈부록2〉: 관련 법률 및 조례

지방재정법

[시행 2017.10.24.] [법률 제14919호, 2017.10.2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세입"(歲入)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3. "세출"(歲出)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4.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5.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1. 지방재정 조정제도와 지방세제도 간의 조화로운 발전방안
2. 합리적·효율적인 예산 편성·관리 기법 및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측정기법
3.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5.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투명성 증대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장치의 개발·보급 방안
6.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지원 방안
7. 성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
8. 그 밖에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8.4.]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

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4.5.28.]

제6조(회계연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삭제 <2016.5.29.>

[전문개정 2011.8.4.]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5.28.>

③ 삭제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8조 삭제 <2016.5.29.>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10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제59조는 제외한다)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5.28., 2015.5.13.>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④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1.8.4.]

[법률 제13283호(2015.5.13.)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제1항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16.5.29.>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8. 「도시철도법」
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0. 「공항시설법」
11. 「신항만건설 촉진법」
1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1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6. 「지방공기업법」
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9. 「택지개발촉진법」
2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 「포플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본조신설 2014.5.28.]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①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채 중 증권 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이하 "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79조, 제484조, 제485조 및 제4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의 규정 중 "사채"는 "지방채증권"으로, "사채권자"는 "지방채권자"로, "채권"은 "증권"으로 보고, 제479조 중 "기명사채"는 "기명지방채증권"으로, "사채원부"는 "지방채증권원부"로,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이하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24.]

제15조 삭제 <2016.5.29.>

제16조 삭제 <2016.5.29.>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17조의2 삭제 <2014.5.28.>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19조(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자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장 경비의 부담

제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

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제2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5.5.13.,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통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2017.7.26.>

1. 제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 1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
2.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재원분담에 관련된 법령 또는 정책 입안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
4. 지방세 특례 및 세율조정 등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3.7.16., 2014.11.19., 2017.7.2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3.7.16., 2014.5.28., 2014.11.19., 2017.3.21., 2017.7.26.>

1.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이 경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해당 협의회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1명을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의 수행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7.7.26.>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된다. <신설 2013.7.16., 2014.11.19., 2015.12.29., 2017.7.26.>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2015.12.29.>

[본조신설 2011.8.4.]

제27조의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①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제26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계획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1.8.4.]

제27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공표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결과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보조사업의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통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7.7.26.>

[본조신설 2013.7.16.]

제27조의5(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제24조, 제27조의4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정보시스템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4.5.28.]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경기 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사업의 유형과 성격, 재정부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협의할 때에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이하 제3항에서 "지방재정영향평가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재정 부담의 소요기간, 소요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제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2.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같은 조에 따른 서류 또는 명세서를 제출할 때

[본조신설 2014.5.28.]

제27조의7(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국고보조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무 수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지방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5.28.]

제27조의8(국고보조사업 집행 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조사하고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12.29.]

제28조(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시·도나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 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새로운 지방세 감면을 요청할 때에는 그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건의서에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5.12.29., 2017.7.26.>

1. 기존 지방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
2. 국고보조사업의 국고 부담비율 상향조정
3.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등 그 밖에 지방재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8.4.]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해당 시·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의 시·군에 배분한다. <개정 2014.5.28.>

③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본조신설 2014.5.28.]

제29조의4(조정교부금 세부명세의 공개)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산정된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를 매년 해당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제30조 삭제 <2014.5.28.>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2조(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8.4.]

제2장의2 지방보조금의 관리 <신설 2014.5.28.>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⑥ 제5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

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10(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11(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제3장 예산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5.28.>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가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2017.7.26.>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1.19., 2017.7.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5.28., 2014.11.19., 2017.7.26.>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1.19., 2017.7.26.>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5.28.>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5.28.>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전문개정 2011.8.4.]

제35조(세출의 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4.5.28.]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

제37조의3(주요 사업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를 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추진상황 및 담당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5.13.,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4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8.4.]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44조(채무부담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시에는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2.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재난 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 중 총사업비가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계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14.5.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

제46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8.]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제4장 결산

제51조 삭제 <2016.5.29.>

제51조의2 삭제 <2016.5.29.>

제52조 삭제 <2016.5.29.>

제53조 삭제 <2016.5.29.>

제53조의2 삭제 <2016.5.29.>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제53조의3 삭제 <2016.5.29.>

제54조(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2017.7.26.>

③ 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본조신설 2011.3.8.]

[제목개정 2014.5.28.]

제55조의3(재정위기단체의 의무 등) 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④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항의 권고 또는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⑦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8.]

제55조의4(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①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1.3.8.]

제55조의5(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그 밖의 재정상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본조신설 2011.3.8.]

제56조(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제60조의3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체에 관한 사항

3. 제60조의4에 따른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 이행상황의 평가 및 권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9.]

제57조(지방재정분석 또는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58조(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지역통합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
2.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4.5.28.]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 가. 교부현황
 - 나. 성과평가 결과
 -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3.>

[전문개정 2014.5.28.]

[제목개정 2015.5.13.]

제60조의2(통합공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4.5.28.]

제5장의2 긴급재정관리 <신설 2015.12.29.>

제60조의3(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55조의2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제55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부터 3년이 지난 날 또는 그 이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
2.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3.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정 위기에 직면하여 긴급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를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으로 긴급재정관리단체를 지정하려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이하 "긴급재정관리단체"라 한다)의 장은 그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른 지정 해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제60조의4(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및 파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재정관리에 관한 업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인을 선임하려면 미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긴급재정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의 작성 및 검토
2. 제60조의6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
3. 그 밖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방법 및 절차, 긴급재정관리인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제60조의5(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직접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하여금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채무 상황 및 감축 계획
2. 경상비 및 사업비 등의 세출구조조정 계획
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수입 증대 계획
4. 그 밖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긴급재정관리계획(이하 "긴급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긴급재정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제60조의6(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긴급재정관리인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인의 직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 및 그 이행상황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이행평가 결과를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⑦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이 부진한 긴급재정관리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에 대해서는 제55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위기단체"는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재정건전화계획"은 "긴급재정관리계획"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12.29.]

제60조의7(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안 편성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승인하여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안이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④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예산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지방의회는 제2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제60조의8(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의 제한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12.29.]

제60조의9(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는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파견 등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

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9.]

제6장 수입

제61조 삭제 <2016.5.29.>

제62조 삭제 <2016.5.29.>

제63조 삭제 <2016.5.29.>

제64조 삭제 <2016.5.29.>

제65조 삭제 <2016.5.29.>

제66조 삭제 <2016.5.29.>

제7장 지출

제67조 삭제 <2016.5.29.>

제68조 삭제 <2016.5.29.>

제69조 삭제 <2016.5.29.>

제70조 삭제 <2016.5.29.>

제71조 삭제 <2016.5.29.>

제72조 삭제 <2016.5.29.>

제73조 삭제 <2016.5.29.>

제74조 삭제 <2014.5.28.>

제75조 삭제 <2016.5.29.>

제76조 삭제 <2016.5.29.>

제8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77조 삭제 <2016.5.29.>

제78조 삭제 <2016.5.29.>

제79조 삭제 <2016.5.29.>

제80조 삭제 <2016.5.29.>

제81조 삭제 <2016.5.29.>

제9장 시효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8.4.]

제83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8.4.]

제84조(납입 고지의 효력)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납입 고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10장 채권의 관리 <개정 2014.5.28.>

제85조(채권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권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채권관리관"이라 한다. <개정 2014.5.28.>

③ 채권관리관은 현금 수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86조(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제87조(관리의 방법 등) ①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적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5.28.>

④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10장의2 부채의 관리 <신설 2014.5.28.>

제87조의2(부채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무, 그 밖의 부채를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부채관리관"이라 한다.

③ 부채관리관은 현금 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채무를 계산하거나 관리할 때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부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은 "부채"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

[중전 제87조의2는 제87조의3으로 이동 <2014.5.28.>]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 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4.5.28.]

[제87조의2에서 이동 <2014.5.28.>]

제11장 복권

제88조(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12장 회계관계공무원

제89조 삭제 <2016.5.29.>

제90조 삭제 <2016.5.29.>

제91조 삭제 <2016.5.29.>

제92조 삭제 <2016.5.29.>

제93조 삭제 <2016.5.29.>

제94조 삭제 <2016.5.29.>

제95조 삭제 <2016.5.29.>

제13장 보칙

제96조 삭제 <2016.5.29.>

제96조의2(지방재정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개와 제60조의2에 따른 통합공시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4.5.28.]

제96조의3(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본조신설 2014.5.28.]

제14장 벌칙 <신설 2014.5.28.>

제97조(벌칙)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1.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2.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
3.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3의2. 제3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본조신설 2014.5.28.]

제9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5.28.]

부칙 <제14919호, 2017.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보조금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 044-215-7158

제1장 총칙 <개정 2011.7.25.>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8., 2017.7.26.>

③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1.4.>

[전문개정 2011.7.25.]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개정 2011.7.25.>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장·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군의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일은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전문개정 2011.7.25.]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6조(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더라도 그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없이 총액으로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내용과 중앙관서의 장의 조정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7.25.]

제8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 제출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요구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보조금의 예산요구액을 조정할 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8.>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8.>

[전문개정 2011.7.25.]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

②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차등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추가적인 소요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1조(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해당 관할구역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 예산액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시한 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전문개정 2011.7.25.]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4.>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4.>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해당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1.4., 2017.7.26.>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4.>

[전문개정 2011.7.25.]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7.25.]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8.]

제3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개정 2011.7.25.>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7.25.]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단위사업별·보조사업자별로 작성한 교부 결정 내용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7.25.]

제20조(보조금의 통합 운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할 때 보조사업의 명세를 세분함으로써 보조금의 규모가 영세하여질 경우에는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일부 취소할 경우에 수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개정 2011.7.25.>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7.25.]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6.1.28., 2017.1.4.>

② 중앙관서의 장(제38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 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에서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제외한다. <신설 2017.1.4.>

③ 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조금관리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7.20., 2017.1.4.>

1.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자격확인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이력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급부금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급부금의 수급 이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5.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
6.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7. 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과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7.25.]

[제목개정 2017.1.4.]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들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9까지에서 같다)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3.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등기기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5. 「주민등록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나. 「국세징수법」 제6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라.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바.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7.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관련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집행 및 중복·부정 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보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1.4.]

제26조의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들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명의인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서면은 전자적 형태로 바꾸어 제출할 수 있다.

③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및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4.]

제26조의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①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유한 자는 그 정보를 보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다.

②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한 자는 자격 검증 등 처리 목적을 달성한 즉시 수집한 자료 또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거나 증거자료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1.4.]

제26조의6(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는 행위
3.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위조·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목적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물리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4.]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정보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으로 본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개선 등 운영에 관한 업무
2. 보조금관리정보 및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신청, 접수, 결정, 교부 및 사후관리의 전자적 지원에 관한 업무
4.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재정정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보조금을 위탁(預託)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되는 보조금의 범위, 구체적인 위탁 방법, 위탁된 보조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4.]

제26조의8(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
5. 「영유아보육법」과 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전산시스템
6.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7. 「아이돌봄 지원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9.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② 제1항 각 호의 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보조금 집행내역 및 보조금 집행 적절성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 식별정보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다만,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의9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4.]

제26조의9(운영기관 협의회 설치 등) ①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과 제26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보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

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이하 "운영기관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정책
2. 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체계
3. 악성프로그램 방지 등 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항

③ 그 밖에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4.]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제27조의2에 따라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삭감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보공시, 시정명령 및 보조금 삭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4.]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8.>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정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8.>

[전문개정 2011.7.25.]

[제목개정 2016.1.28.]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8., 2017.10.31.>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정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8.>

[전문개정 2011.7.25.]

[제목개정 2016.1.28.]

[시행일 : 2018.11.1.] 제27조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업자"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특정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다시 교부하는 등 그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정사업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회계감사의 기준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8.]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업자"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자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

정 2017.10.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특정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다시 교부하는 등 그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정사업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회계감사의 기준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8.]

[시행일 : 2018.11.1.] 제27조의2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개정 2016.1.28.>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

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등을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간접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기준과 이와 관련된 정보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8.]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8.]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1.28.]

제33조의3(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31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2. 보조금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보조사업자등이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본조신설 2016.1.28.]

제6장 보칙 <개정 2011.7.25.>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1.7.25.]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

권 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8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본조신설 2016.1.28.]

제36조(검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4.>

1.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2.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에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8.]

제37조(이의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②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8.>

[전문개정 2011.7.25.]

제38조(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39조(회계 관계에 관한 규정)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9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8.>

1.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2.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39조의3(대국민 이용 지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 또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국민에게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검색, 조회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정보취약계층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구축·관리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사용 지원 대책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1.4.]

제3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의7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1.4.]

제7장 벌칙 <개정 2011.7.25.>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7.1.4.]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8., 2017.1.4.>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1.7.25.]

제42조(벌칙) ①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16.1.28.]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부칙 <제14839호, 2017.7.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02-2100-3767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시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5.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2017.7.26.>

제4조의2(등록의 말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 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1월 31일까지 공고하거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2017.7.26.>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자격,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2017.7.26.>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①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5.18.,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업추진실적, 사업성과, 사업비 지출내역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2017.7.26.>

[제목개정 2015.5.18.]

제10조(조세감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우편요금의 지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조금의 환수등)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 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 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5.18.]

제13조(벌칙) ①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②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부칙 <제6118호, 2000.1.12.>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5> 까지 생략

<20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3>까지 생략

<17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9조, 제1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46호, 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사업 선정기준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관한 선정기준을 공고하였거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796호, 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9조, 제1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90호, 2015.5.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88호, 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의 말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 말소의 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비영리민간단체는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 말소의 절차가 진행 중인 비영리민간단체로 본다.

부칙 <제14839호, 2017.7.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5.] [서울특별시조례 제6386호, 2017.1.5.,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 02-2133-656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 금액의 결정
 2. 해당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
- ③ 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독창성
2. 경제성
3. 파급효과
4.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5.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6.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7.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0.8>

1.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0.8., 2017.1.5.>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5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0.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회의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및 서기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공익사업선정사무 담당과장, 서기는 공익사업선정사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제9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4919호, 20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5999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6호, 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5.] [서울특별시조례 제6386호, 2017.1.5.,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 02-2133-656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공익활동”이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2. “NPO”란 시민공익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민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을 행하는 시민, NPO는 각 주체의 다양성과 자발성 및 창조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공익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참여) 시민은 누구나 시민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주도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활동내용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위원회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시민공익활동 촉진과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고 NPO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NPO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위탁 및 운영
2.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 시설물 및 물품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참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사회발전 및 시민공익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1.5.>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NPO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1.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NPO 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2. 시민공익활동을 행하는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NPO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등

제9조(설치)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민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시민공익활동 및 NPO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3.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4.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상담·컨설팅
5. NPO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6.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조사·연구
7.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8. 그 밖에 시민공익활동 및 NPO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하 “운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운영비 지원 및 정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자는 시장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센터의 운영) 센터운영을 위탁받은 운영자는 센터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사용료 등) ① 센터를 이용하는 NPO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시설 및 설비 사용료 등 이용기준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센터를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민공익활동을 촉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493호, 2013.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6호, 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15.5.14.] [서울특별시조례 제5930호, 2015.5.14., 전부개정]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 02-2133-656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기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 ④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자치구 부담 경비의 협의)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할 때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시비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자치구의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의 범위와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시비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의 재정사

정 등을 감안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차등보조율과 적용대상이 되는 자치구의 범위 및 적용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치구의 부담의무) 구청장은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자치구의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④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관리담당관이 된다.

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19조제4항에 따른 심사와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서 작성·제출을 위하여 사업부서별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교부결정)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22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3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27조(용도의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9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30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로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31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2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4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9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6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930호, 2015.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회계연도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964호, 2010.4.22.)는 폐지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 제9항 및 제51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⑩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 ⑪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 제4항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를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4조" 로 한다.
- ⑫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 ⑬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 제2항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를 "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4조" 로 한다.
- ⑭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 ⑮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를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를 "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

조" 로 한다.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서울특별시 현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서울특별시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서울특별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판권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실효성 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발행일 : 2017년 12월

발행처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발행인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 김경호

주관부서 : 행정자치전문위원실(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입법조사관 신정희)
입법담당관(입법담당관 배선희, 입법조사관 이경하, 주무관 이수호)

홈페이지 : <http://www.smc.seoul.kr>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전화) 02-3705-1342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2-3705-1170 (입법담당관)

과제제안 : 서울특별시의회 이명희 의원

연구기관 : 한국NGO학회

책임연구 : 박상필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대우교수

연락처 : 042-252-9837

발간등록번호 : 51-6110100-000078-01

※ 본 학술연구용역보고서의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서울특별시의회가 해당 학술연구용역 보고서를 대국민 공개한 이후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음)

ISBN : 979-11-6161-098-6 93330